

생명인품진심

전라남도 **도보**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023-26호 2023년 5월 4일 (목)

www.jeonnam.go.kr

목 차

◆ 고 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178호	신안 천사섬 다맛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실시계획 등 일괄 지정·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179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180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181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183호	회순온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과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185호	함평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186호	해남 옥천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187호	2023년 소규모 수계연결사업(공사) 시행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188호	2023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공사) 시행계획 승인 고시

◆ 공 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53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53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5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53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53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53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53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8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9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3-550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3-551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3-552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3-553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3-554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3-555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3-564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3-569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3-571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3-57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측량업 신규 등록 공고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 **시군행정**

목포시 고시 제2023-65호
 목포시 공고 제2023-769호
 순천시 공고 제2023-1021호
 나주시 고시 제2023-75호
 광양시 고시 제2023-145호
 광양시 고시 제2023-150호
 광양시 고시 제2023-151호
 광양시 고시 제2023-153호
 광양시 공고 제2023-1007호
 강진군 공고 제2023-432호
 강진군 공고 제2023-439호
 무안군 고시 제2023-52호
 무안군 공고 제2023-478호
 영광군 고시 제2023-39호
 신안군 공고 제2023-513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중로1-2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목포 도시계획시설(중로1-17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사업 완료 공고
 나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213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제56호)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제9호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제13호, 소로3-670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도로 중로2-3(중앙초-동일제제소) 보상계획(열람) 공고
 보상계획(열람) 공고
 무안 군계획시설(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몽탄면 사천리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을 위한 군관리계획(지역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열람 공고
 영광군계획시설(장사시설)사업 토지 등의 세목(변경) 고시
 신안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전라남도 고시 제2023-178호

신안 천사섬 다맛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실시계획 등
일괄 지정·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신안 천사섬 다맛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①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1. 지역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천사섬 다맛 어울림공간 조성사업

나.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85-1 일원

다. 면 적 : 4,900㎡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지정목적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세계음식 개발을 통한 지역홍보 등 지역 활성화

나. 시행기간 : 2019년 ~ 2025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자 : 신안군수

나. 사업시행방식 : 신안군 직접시행 / 수용 또는 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토사유출 방지대책

1) 부지 정지 공사는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시행

2) 절·성토 공사 시 우수배제시설 선 시행 후 가배수로 및 간이침사지 설치

나. 녹지보전계획

1) 사업 시행 시 시설조성을 위하여 일부 구간 훼손이 불가피하나 친환경적 시설물 및 조경 공간 조성

2) 기존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며 조경 및 휴식 공간조성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

다. 대기질 보전계획

1) 사업대상지는 4,900㎡의 소규모 지역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되며, 공사장 내 살수 및 세륜 시설 설치와 함께 공사 차량 운행속도 제한(20km/h 이하)

- 2) 진입도로 및 작업도로 우선 포장, 토사운반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과적 금지, 공사구역 외곽경계부 방진망 설치 후 공사 추진

라. 폐기물 처리계획

- 1) 철거폐기물은 폐콘크리트, 철재 등 선별 작업 후 재활용 업체 위탁 및 소각처리
- 2)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지자체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하며, 현장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분뇨 등 주기적으로 처리

마. 소음처리계획

- 1) 건설공사 소음 관리요령을 준수하며, 공사차량 저속운행 및 경적사용 금지
- 2) 방음 판넬 설치하며, 작업시간은 주간으로 제한하고 작업 대기 중인 건설장비 엔진은 정지하여 소음 노출 시간 단축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 계획

○ 일일 이용자 수 341명, 연간 124,607명

구 분	압해읍	신안군 (압해읍 제외)	산출 근거
인구	6,340명	33,702명	- 2020년 기준
이용률	60.8%	30.4%	- 지역문화시설 연간이용률 30.4%, 이용횟수 6.3회(문체부 조사, 2018) - 중심지의 경우 2배수 적용
1인당 연간이용횟수	12.6회	6.3회	
연간 이용자 수	48,570명	63,895	인구×이용률×횟수
일일 이용자 수	133명	175	연간 이용자 수/365일

나. 교통처리 계획

○ 교통안전 및 시설계획

- 국도 2호선 접도 지역으로 통행량이 많아 차량 진입로와 보행자 진입로 구분
- 주 진출입로 외 기존 도로와 연결된 도로 개통

다. 토지이용계획

1) 사업구간 : 전라남도 압해읍 학교리 585-1 일원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 계	4,900	100	
지원시설용지	소계	711	14.7
	음식부스	180	3.6
	문화시설	531	11.1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공공시설용지	소계	995	20.2	
	도로 / 주차장	120	2.5	
	보행자 도로	875	17.7	
녹지용지	소계	3,194	65.1	
	공원 / 녹지	3,194	65.1	

6. 제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및 주차장 계획

○ 주차장 9면 설치(일반주차장 7면, 장애인 주차장 2면)

- 음식부스, 다맛 어울림공간, 야외무대 총 면적 711m² 반영한 주차장 조성

나. 상하수도 계획

○ 1구간 : 수로관(D75) L=223.0m / 수로관 덮개(1000*500*75) L=223.0m(기존 수로관)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별		
	국비	지방비	기타
2,200	2,000	200	-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2,200	200	200	350	500	450	250
국비	2,000	-	200	350	500	450	250
지방비	200	200	-	-	-	-	-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보상대상 토지 현황

1) 위치 :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85-1 일원

2) 천사섬 다맛 어울림공간 조성

나. 보상계획

1) 시 기 : 2019년 ~ 2025년

2) 금 액 : 200,000천원

다.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신안군 자체 운영)

11.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1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85-1	대	2,557	1,863
2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85-3	도	3	3
3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85-4	대	810	810
4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86	전	668	495
5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86-4	도	159	94
6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86-5	대	225	19
7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86-6	대	122	122
8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87	전	1,160	1,160
9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88-7	대	5,554	334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의 주요내용

1) 외국인, 다문화 가족, 주민, 방문객 등 소통 공간 조성

-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세계음식 및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과 연계한 퓨전 음식 개발·판매
-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방적 소통 공간 조성
- 주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방문객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장 조성
- 외국인의 정착·적응을 위한 교육 및 정보교환의 장 마련

14.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신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행정복지타운	공공 청사	압해읍 학교리 575번지 일원	18,544	감)3,646	14,898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행정복지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청사 신설 ·면적: 14,8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급증하는 다문화 가족과 특색있는 문화관광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으로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을 변경하고자 함

15. 기타 관계 서류 및 도면: 게재 생략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신안군 섬발전진흥과(☎061-240-4082)에 비치

②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가. 명 칭 : 신안군

나. 대 표 자 : 신안군수

다. 소 재 지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번지 신안군청

2. 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목적

가. 명 칭 : 천사섬 다맛 어울림공간 조성사업

나. 위 치 :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85-1 일원

다. 목 적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세계음식 개발을 통한 지역홍보 등 지역 활성화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9년 ~ 2025년(7년)

4. 위치도, 사업계획서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5. 자금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별		
	국비	지방비	기타
2,200	2,000	200	-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2,200	200	200	350	500	450	250
국비	2,000	-	200	350	500	450	250
지방비	200	200	-	-	-	-	-

③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시행자: 신안군수

나. 주 소: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번지 신안군청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의 명칭: 천사섬 다맛 어울림공간 조성사업

나. 사업의 목적: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세계음식 개발을 통한 지역홍보 등 지역 활성화

다. 위치 및 면적

1) 위 치: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85-1 일원

2) 면 적: 4,900㎡

라. 시행기간: 2019년 ~ 2025년(7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게재 생략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게재 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별		
	국비	지방비	기타
2,200	2,000	200	-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2,200	200	200	350	500	450	250
국비	2,000	-	200	350	500	450	250
지방비	200	200	-	-	-	-	-

6. 기타 관계 서류 및 도면: 게재 생략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신안군 섬발전진흥과(☎061-240-4082)에 비치하고 열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토지의 명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관계인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1,258	4,900						
1	압해읍 학교리	585-1	대	2,557	1,863	신안군					
2	압해읍 학교리	585-3	도	3	3	신안군					
3	압해읍 학교리	585-4	대	810	810	신안군					
4	압해읍 학교리	586	전	668	495	신안군					
5	압해읍 학교리	586-4	도	159	94	신안군					
6	압해읍 학교리	586-5	대	225	19	신안군					
7	압해읍 학교리	586-6	대	122	122	이행규	사망	이상수(장남)	지도읍 신장리	상속	
								이희숙(차녀)	목포거주		
8	압해읍 학교리	587	전	1,160	1,160	신안군					
9	압해읍 학교리	588-7	대	5,554	334	신안군					

전라남도 고시 제2023-179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 보전 등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영광군 흥농·법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 인가내용

사업의 목적		생활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	
시설의 명칭		함평군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	
사업시행자	성명	함평군수	
	주소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사업시행지	위치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대동면, 학교면, 엄다면 일원	
	면적	2,852㎡(관로설치 면적)(영구점용)	
사업내용		하수관로 정비 23.1km, 펌프장 17개소 등	
처리공법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처리구역 및 배수구역		처리구역	배수구역
		40.3ha	함평천 → 영산강
사업시행기간		2023년 ~ 2025년	

※ 관계 도서 열람 장소: 함평군 맑은물사업소(061-320-1847)

전라남도 고시 제2023-180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 보전 등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영광군 흥농법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 인가내용

사업의 목적		생활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	
시설의 명칭		담양군 수북면 두동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성명	담양군수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사업시행지	위치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두정리 일원	
	면적	268.5㎡(관로설치 면적)(영구점용)	
사업내용		오수관로 정비 1.62km, 펌프장 1개소 등	
처리공법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처리구역 및 배수구역		처리구역	배수구역
		5.9ha	영산강
사업시행기간		2023년 ~ 2024년	

※ 관계 도서 열람 장소: 담양군 물순환사업소(061-380-3336)

전라남도 고시 제2023-181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법 인 명	대표자	산림사업의 종 류	등록번호	소재지	등 록 취소일자	등록취소 사 유
유한회사 엔케이	김*욱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전남2020-032	전남 나주시	' 23. 4. 27.	폐업

전라남도 고시 제2023-183호

화순 화순온천관광지 조성계획(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관광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화순온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1. 관광지 명칭(변경없음) : 화순 온천 관광지
2. 관광지 위치(변경없음) : 전라남도 화순군 백아면 옥리 498번지 일원
3. 관광지 면적(변경없음) : 358,550㎡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주식회사 에스에프이음
5. 사업기간(변경없음) : 2022년 ~ 2025년
6. 지형도 : 게재생략
7.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 다음
8.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다음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다음
9. 편입토지조서 : 게재생략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조성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관광과 (061-286-5231)와 화순군청 관광진흥과 (061-379-3532)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화순 온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 1. 관광지 명칭(변경없음) : 화순 온천 관광지
- 2. 관광지 위치(변경없음) : 전라남도 화순군 백이면 옥리 498번지 일원
- 3. 관광지 면적(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화순온천 관광지	전라남도 화순군 백이면 옥리 498번지 일원	358,550	-	358,550	-

4. 사업기간(변경없음) : 2022년~2025년

5. 조성계획 변경사유

○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및 연면적 변경

- 화순군 옥리에 위치한 화순온천 관광지 내에 4차산업 발전에 맞추어 신개념 SF공상과 학 로봇콘텐츠 및 ICT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략전투, 드론, 로봇배틀, AR/VR/MR/XR 체험, 키즈존등이 결합된 융복합 테마파크로 개발하고 미래기술을 통해 신규관광 인프라를 확대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관광/문화/예술의 특화 콘텐츠를 확보하여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에스에프 이음

7. 관광지 사업계획 변경내용 (관광시설계획서)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토지이용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증감	변경	변경율	기정	증감	변경	변경율
계		358,550	-	358,550	-	244,489	증)4,415.32	248,904.32	2.2
공공편익 시설지구	기반시설	93,524	감)648	92,876	0.7	100	감)100	-	100
	공공시설	20,608	-	20,608	-	3,196	-	3,196	-
상가 시설지구	상업시설	23,018	-	23,018	-	43,270	-	43,270	-
숙박 시설지구	숙박시설	100,546	-	100,546	-	191,549	-	191,549	-
관광휴양오락 시설지구	휴양문화	5,893	-	5,893	-	5,034	증)205	5,239	4.1
	운동오락	11,376	증)1,131	12,507	9.9	1,270	증)4,310.32	5,580.32	339.4
기타 시설지구	녹지시설	104,585	감)483	104,102	0.5	70	-	70	-

나. 세부시설계획 변경

구분	토지이용면적			건축물(동)		건축연면적(㎡)			층수		변경율 (%)	구성비 (%)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계	358,550	-	358,550	70동	70동	244,489	증)4,415.32	248,904.32	-	-	(2.2)	100.0	
1 기본시설	93,524	감)648	92,876	2동	2동	100	감)100	-	-	-	0.7 (100)	25.9	
	도로	68,145	-	68,145	1동	1동	-	-	-	-		19.0	
	광장	4,501	-	4,501	-	-	-	-	-	-		1.3	
	주차장	19,878	감)648	19,230	3개소 1동	3개소 1동	100	감)100	-	-		-	5.4
2 공공시설	20,608	-	20,608	5동	5동	3,196	-	3,196	-	-	-	5.7	
	관리,의료	2,639	-	2,639	2동	2동	1,200	-	1,200	2		2	0.7
	피출소, 우체국, 소방소	2,753	-	2,753	1동	1동	1,000	-	1,000	2		2	0.8
	전망대	796	-	796	1동	1동	796	-	796	2		2	0.2
	잔디 광장	14,025	-	14,025	2개소	2개소	100	-	100	1		1	3.9
	조합 사무실	395	-	395	1동	1동	100	-	100	1		1	0.1
3 상업시설	23,018	-	23,018	14동	14동	43,270	-	43,270	-	-	-	6.4	
	종합상가	12,176	-	12,176	13동	13동	24,352	-	24,352	5이하		5이하	3.4
	온천장	10,842	-	10,842	1동	1동	18,918	-	18,918	5이하		5이하	3.0
4 숙박시설	100,546	-	100,546	46동	46동	191,549	-	191,549	-	-	-	28.0	
	호텔	30,711	-	30,711	3동	3동	61,422	-	61,422	10이하		10이하	8.6
	여관	53,611	-	53,611	41동	41동	97,731	-	97,731	6이하		6이하	15.0
	유스호스텔	4,561	-	4,561	1동	1동	9,070	-	9,070	8이하		8이하	1.3
	콘도미니엄	11,663	-	11,663	1동	1동	23,326	-	23,326	14이하		14이하	3.3
5 휴양 문화시설	5,893	-	5,893	1동	1동	5,034	증)205	5,239	-	-	- (4.1)	1.6	
	보호각	4,036	-	4,036	1동	1동	4,036	-	4,036	-		-	1.1
	청소년 체험장	1,857	-	1,857	-	1동	998	증)205	1,203	-		-	0.5
6 운동/ 오락시설	11,376	증)1,131	12,507	1동	1동	1,270	증)4,310.32	5,580.32	-	-	9.9 (339.4)	3.4	
	체육시설	11,376	증)1,131	12,507	1동	1동	1,270	증)4,310.32	5,580.32	2이하		2이하	3.4
7 녹지시설	104,585	감)483	104,102	1동	1동	70	-	70	-	-	0.5	29.1	
	잔디녹지	8,361	-	8,361	-	-	-	-	-	-		2.3	
	자연녹지	96,224	감)483	95,741	1동	1동	70	-	70	-		-	26.8

II.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화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용도지역·지구·구역(변경)결정 조서 - 변경없음
- 2.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조서 - 변경없음

② 지구단위계획 계획결정(변경)조서

-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토지이용면적(㎡)			건축면적(㎡)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계		358,550	-	358,550	244,489	증)4,415.32	248,904.32
공공편익시설지구	기반시설	93,524	감)648	92,876	100	감)100	-
	공공시설	20,608	-	20,608	3,196	-	3,196
상가시설지구	상업시설	23,018	-	23,018	43,270	-	43,270
숙박시설지구	숙박시설	100,546	-	100,546	191,549	-	191,549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휴양문화	5,893	-	5,893	5,034	증)205	5,239
	운동오락	11,376	증)1,131	12,507	1,270	증)4,310.32	5,580.32
기타시설지구	녹지시설	104,585	감)483	104,102	70	-	7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등급	종류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805	8	보조 간선 도로	10,711	백아면 원리 소로 1-701	백아면 임곡리 구역계	일반 도로	

2. 가구 및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1) 공공편익시설지구 (변경)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기정	증감		변경
공공 편익 시설 지구	총 합계(기반시설+공공시설)			44,987	감)648	44,339	기반시설 증 도로 제외
	합계			4,501	-	4,501	-
	A1	4,501	화순군 백이면 옥리 521-1	4,501	-	4,501	광장
	합계			19,230	-	19,230	-
	A2	13,122.8	화순군 백이면 옥리 512-11	13,123	-	13,123	주차장
	A3	5,710.7	화순군 백이면 옥리 85-6	5,711	-	5,711	
	A4	396.1	화순군 백이면 서유리 산150-15	396	-	396	
	A5	648.4	화순군 백이면 옥리 498	648	감)648	-	
	합계			5,392	-	5,392	-
	A6	2,639	화순군 백이면 옥리 622-19	2,639	-	2,639	관리,의료
	A7	890	화순군 백이면 옥리 652-1	890	-	890	피출소
	A8	381	화순군 백이면 옥리 산150-4	381	-	381	우체국
	A9	1,482	화순군 백이면 옥리 619	1,482	-	1,482	소방소
	합계			796	-	796	-
	A10	796	화순군 백이면 옥리 622-33	796	-	796	전망대
	합계			14,025	-	14,025	-
	A11	14,025	-	14,025	-	14,025	잔디광장
	합계			395	-	395	-
-	-	-	395	-	395	조합사무실	

(2) 상가시설지구 (변경없음)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상가 시설 지구	총 합계			23,018	
	B1	472.9	화순군 백이면 서유리 산150-5	472.9	종합상가
	B2	1,050.7	화순군 백이면 옥리 635-8	1,050.7	
	B3	4,173.5	화순군 백이면 옥리 686-1	4,173.5	
	B4	227.3	화순군 백이면 옥리 619-3	227.3	
	B5	6,395.5	화순군 백이면 옥리 519-2	6,251.6	
	B6	10,842	화순군 백이면 옥리 582-1	10,842	온천장

(3) 숙박시설지구 (변경없음)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숙박 시설 지구	총 합계(여관+호텔+콘도미니엄+유스호스텔)		100,546		
	합계		53,611		
	C1	4,996.4	화순군 백야면 서유리 산147		여관
	C2	2,256.0	화순군 백야면 서유리 산150-1		
	C3	1,268.9	화순군 백야면 옥리 635-1		
	C4	1,480.8	화순군 백야면 옥리 635-4		
	C5	4,976.9	화순군 백야면 옥리 635-12		
	C6	1,767.0	화순군 백야면 옥리 622-20		
	C7	1,177.0	화순군 백야면 옥리 622		
	C8	1,431.3	화순군 백야면 옥리 산74		
	C9	854.4	화순군 백야면 옥리 산74-1		
	C10	3,307.4	화순군 백야면 옥리 615-7		
	C11	5,672.3	화순군 백야면 옥리 612-19		
	C12	1,224.4	화순군 백야면 옥리 611-4		
	C13	3,435.8	화순군 백야면 옥리 612-1		
	C14	1,244.1	화순군 백야면 옥리 612-10		
	C15	6,212.2	화순군 백야면 옥리 612-8		
	C16	1,609.7	화순군 백야면 옥리 600-1		
	C17	1,858.2	화순군 백야면 옥리 509		
	C18	967.8	화순군 백야면 옥리 505-4		
	C19	1,726.5	화순군 백야면 옥리 504		
	C20	1,105.7	화순군 백야면 옥리 505-6		
	C21	1,340.7	화순군 백야면 옥리 503		
	C22	1,266.5	화순군 백야면 옥리 503-2		
	C23	1,027.5	화순군 백야면 옥리 500-3		
	C24	1,158.1	화순군 백야면 옥리 502		
	합계		30,711		
	C25	11,337.9	화순군 백야면 서유리 151-3		호텔
	C26	10,755.9	화순군 백야면 옥리 622-10		
	C27	9,784.8	화순군 백야면 옥리 615-1		
합계		11,663			
C28	11,663	화순군 백야면 옥리 589		콘도미니엄	
합계		4,561			
C29	4,561	화순군 백야면 옥리 635-6		유스호스텔	

(4)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변경)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기정	증감	변경	
총 합계(휴양문화운동오락)				13,233	증)1,131	14,364	
휴양·문화 시설	합계			1,857.0	-	1,857	-
	D1	1,857.0	화순군 백야면 옥리 산169-4	1,857.0	-	1,857	청소년 이용시설
운동·오락 시설	합계			11,376	증)1,131	12,507	-
	D2	11,376	화순군 백야면 옥리 산169-5	11,376	증)1,131	12,507	체육시설

(5) 기타시설지구 (변경)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기정	증감	변경	
기타 시설 지구 (녹지)	총 합계			104,585	감)483	104,102	-
	E1	85,507.3	화순군 백야면 옥리 635-1	85,507.3	-	85,507.3	자연녹지
	E2	1,754.9	화순군 백야면 옥리 622-6	1,754.9	-	1,754.9	
	E3	1,065.8	화순군 백야면 옥리 산65-8	1,065.8	-	1,065.8	
	E4	1,145.3	화순군 백야면 옥리 산73-3	1,145.3	-	1,145.3	
	E5	1,778.7	화순군 백야면 옥리 612-8	1,778.7	-	1,778.7	
	E6	4,972.0	화순군 백야면 옥리 498-2	4,972.0	감)483	4,489.0	
	E7	1,267.8	화순군 백야면 옥리 579	1,267.8	-	1,267.8	잔디녹지
	E8	384.8	화순군 백야면 옥리 582-4	384.8	-	384.8	
	E9	775.6	화순군 백야면 옥리 510-3	775.6	-	775.6	
	E10	5,673.5	화순군 백야면 옥리 800-4	5,673.5	-	5,673.5	
	E11	259.3	화순군 백야면 옥리 499	259.3	-	259.3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0	전망대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 전망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바목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이내
		용 적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이내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높 이	• 지상 2층 이하
		배 치	•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형태권장
		색 채	-
B1-B5	종합 상가	용 도	• 지정용도 : 상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7호의 판매시설,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40%이내
		용 적 율	• 260%이내
		높 이	• 지상 5층 이하
		배 치	•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형태권장
		색 채	-
B6	온천장	용 도	• 지정용도 : 상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7호의 판매시설,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40%이내
		용 적 율	• 260%이내
		높 이	• 지상 5층 이하
		배 치	•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형태권장
		색 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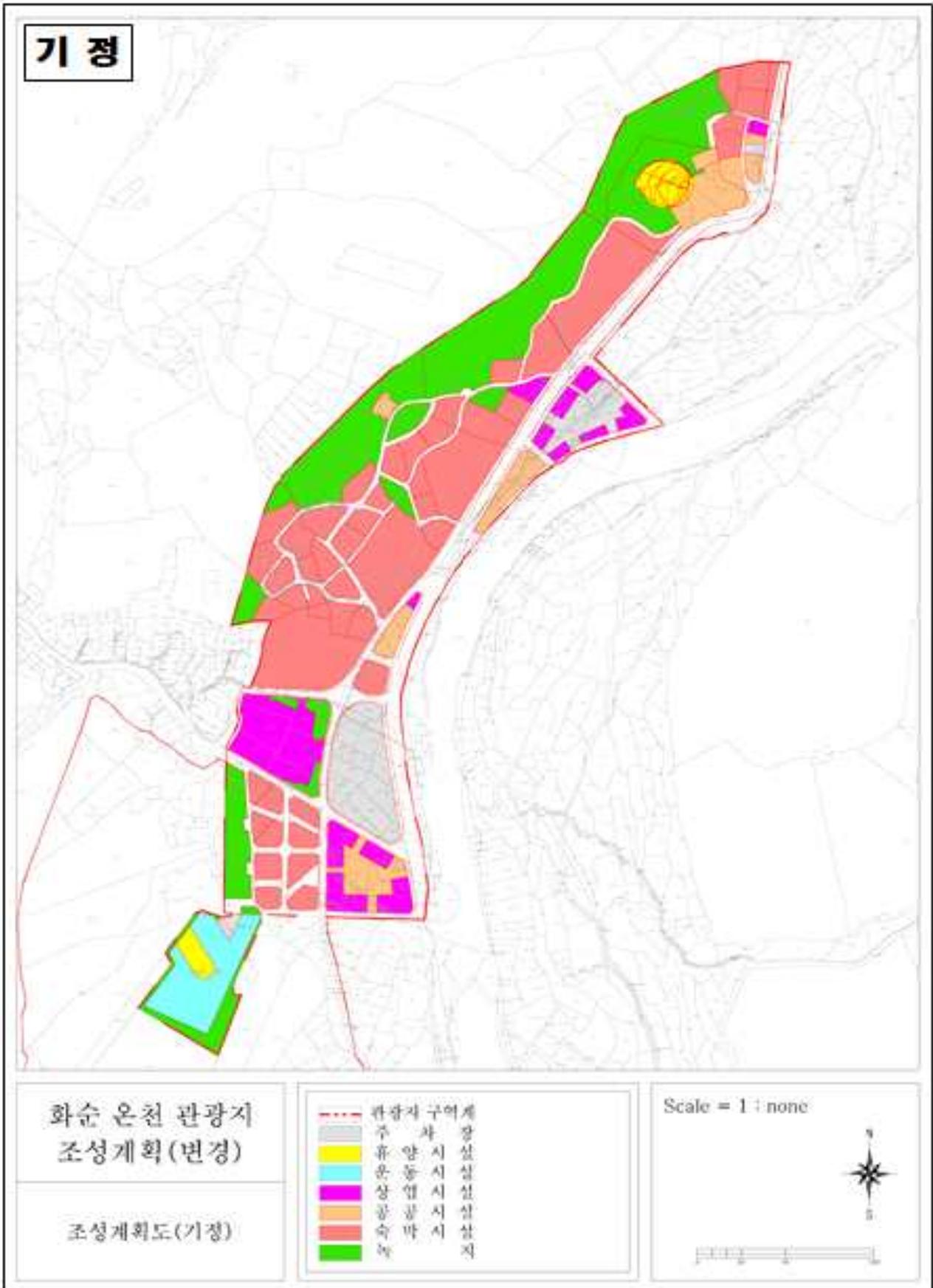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1-C24	여관	용 도	• 지정용도 :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의 숙박시설 지구내 허용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40%이내
		용 적 율	• 200%이내
		높 이	• 지상 6층 이하
		배 치	•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형태권장
		색 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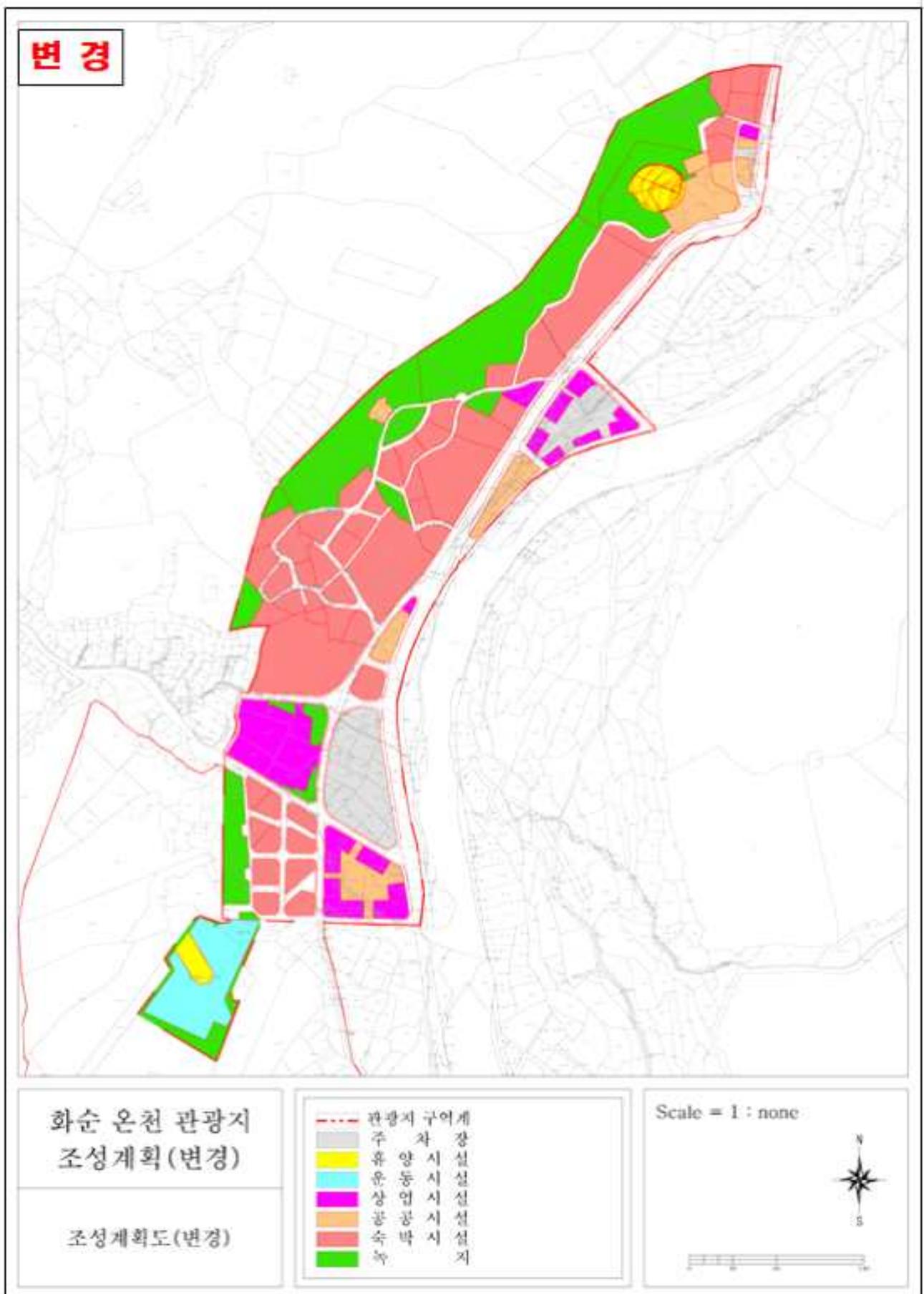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25-C27	호텔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의 숙박시설 지구내 허용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40%이내
		용 적 율	• 200%이내
		높 이	• 지상 10층 이하
		배 치	•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형태권장
		색 채	-
C28	콘도 미니업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 콘도미니업,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숙박 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의 숙박시설 지구내 허용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40%이내
		용 적 율	• 200%이내
		높 이	• 지상 14층 이하
		배 치	•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형태권장
		색 채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29	유스 호스텔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의 숙박시설 지구내 허용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40%이내
		용 적 율	• 200%이내
		높 이	• 지상 8층 이하
		배 치	•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형태권장
		색 채	-
D1	청소년 이용시설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 청소년 이용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비목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이내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 적 율	• 150%이내
		높 이	• 2층 이하
		배 치	•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형태권장
		색 채	-
D2	체육 시설	용 도	• 지정용도 : 눈썰매장, 풋살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및 4호제 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비목 관광지 부수되는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50%이내
		용 적 율	• 100%이내
		높 이	• 지상 4층 이하
		배 치	•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형태권장
		색 채	-

III. 화순온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지형도





전라남도 고시 제2023-185호

함평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함평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I. 농공단지 개요(변경)

1. 관리기관(변경없음)

- 함평군수

2. 조성목적(변경)

-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현

- 함평한우의 역사와 전통을 살린 가공,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

- 함평 나비와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생산과 판매를 통해 일자리 및 소득창출

- 주변의 지역특화자원과 연계를 통한 함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

- 지역농수축산물(로컬푸드) 가공단지 조성,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함평나비, 함평골프고 등 지역 청정이미지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

- 특화산업단지와 연계한 기반시설 및 투자 여건 제공

- 기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투자여건(진입로개선, 공공편의 및 한우 먹거리 체험 휴식 공간 등의 확보) 마련

- 추가적인 민간투자 여건 마련 지속 추진

-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기존 한우시장과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여건(한우먹거리 판매장소 등) 마련

- 인접 대도시

- 광주시와 나주시 등 인접 도시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장점을 살려 기반시설 정비

- 대도시 상권과 연계한 우수농수축산물의 연계사업 추진

3. 근 거 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4. 소 재 지 :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35-162 일원

5. 조성면적

- 당초 143,550㎡

- 변경 318,564㎡

6. 개발기간

- 당초 2013년 ~ 2018년
- 변경 2018년 ~ 2023년

7. 추진경위(변경)

- 2014. 08. 05 : 농공단지계획 승인 신청(함평군→전라남도)
- 2014. 12. 11 : 학교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함평군 고시 제2014-79호)
- 2015. 11. 11 : 학교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변경승인 고시 (함평군 고시 제2015-87호)
- 2016. 04. 25 : 학교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변경승인 고시 (함평군 고시 제2016-31호)
- 2017. 02. 02 : 학교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변경승인 고시 (함평군 고시 제2017-5호)
- 2017. 07. 27 : 학교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7-259호)
- 2018. 12. 20 : 학교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변경 승인 고시 (함평군 고시 제2018-123호)
- 2019. 12. 24 : 학교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변경) 승인 고시 (함평군 고시 제2019-163호)
- 2020. 09. 16 :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3호)
- 2021. 07. 09 : 전남 함평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43호)
- 2022. 10. 25 : 전남 함평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07호)
- 2023. 01. 19 : 전남 함평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23-20호)
- 2023. 01. 31 : 학교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함평군 고시 제2023-5호)

8. 분양 현황(변경)

- 당초

구분	총계	분양대상면적					분양 미대상
		계	분양	미분양			
				소계	조성	조성중	
계	143,550	106,178	46,675	59,503	9,328	50,175	37,372
산업시설구역	95,814	95,814	46,675	49,139	-	49,139	-

구분	총계	분양대상면적					분양 미대상
		계	분양	미분양			
				소계	조성	조성중	
지원시설구역	10,364	10,364	-	10,364	9,328	1,036	-
공공시설구역	37,372	-	-	-	-	-	37,372

○ 변경

구분	총계	분양대상면적					분양 미대상
		계	분양	미분양			
				소계	조성	조성중	
계	318,564	209,828	46,675	163,153	9,328	153,825	108,736
산업시설구역	195,315	195,315	46,675	148,640	-	148,640	-
지원시설구역	17,564	9,531	-	9,531	-	9,531	8,033
공공시설구역	105,685	-	-	-	-	-	105,685

9.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식품제조업 (C10)	95,814	증 99,501	195,315	100.0	

10. 입지여건(변경)

시설명	2021. 12월 기준	확충계획		
		규모	시행 기관	
교통 (도로)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1호선 및 국도23호선 인접(0.5km내외) 무안-광주고속도로(동함평C), 서해안고속도로(함평C) 인접 광주광역시에서 약 32km거리에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진입도로 확장 : B=10m→15m, L=78m 부진입도로 신설 : B=12m, L=176m 	함평군
	변경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남선(함평역, 1km 내외) 이용 			
항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평항(21km 내외) 이용 			
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안국제공항(14km 내외), 광주공항(40km내외) 이용 			
용수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용수 : 42㎡/일 공업용수 : 1,656㎡/일 	함평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용수 : 100㎡/일 공업용수 : 3,220㎡/일 		

시설명		2021. 12월 기준	확충계획	
			규모	시행 기관
오·폐수	당초		◦ 폐수종말처리장 1,300m ³ /일	함평군
	변경		◦ 폐수종말처리장 1,900m ³ /일(증설)	
전력	당초		◦ 26 Mwh/년	한전
	변경		◦ 54 Mwh/년	
통신	당초		◦ 17회선	KT
	변경		◦ 60회선	
환경			◦ 업체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실수요자

II.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 방향(변경없음)

가. 목 표

○ 농공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입주기업의 지원활동 도모

나. 추진방향

- 입주업체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및 근로자 후생복지 증진
- 공해업종의 제한 및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환경오염 배제
- 합리적인 업종별 공장배치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계	143,550	증) 175,014	318,564	100.0	
산업시설용지	95,814	증) 99,501	195,315	61.3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10,364	증) 7,200	17,564	5.5	제1·2종근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창고시설, 업무시설
공공시설용지	19,621	증) 31,705	51,326	16.1	도로, 주차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수지
녹지용지	17,751	증) 36,608	54,359	17.1	공원, 녹지

3. 입주 및 사후관리

가. 입주대상 업종(변경)

1) 산업시설구역(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상 C10 및 D35 업종
 - 식료품제조업[C10, 식료품제조업 중 도축업종에 한하여 육류 도축업(C10111, 가금류 제외)만 가능],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업(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설비를 공장 시설구역내 공장부지 안 건축물 상부설치에 한함), 부동산임대업(L68)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2) 지원시설구역(변경)

- 일반 실 수요자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함

나. 입주 제한 업종(변경)

-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업종(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장 중 입주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
- 위 항에 해당하는 업종중 업종배치계획에 따른 육류 도축업(C10111, 가금류 제외)은 입주가능함

다. 입주자격(변경)

1) 산업시설구역(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
- 환경성 및 사업성 적합 업체일 것
-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에 의한 수의계약 공급대상자
-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체로서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한 업체일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시설구역(변경)

- 일반 실수요자 및 「산집법」 법률 제2조 제1호의 입주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집법」 제2조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용지별 허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라. 입주 우선순위(변경없음)

- 단지 내 입주대상 업종에 적합하고, 관리기관과의 MOU/MOA 등 협약을 체결한 업체 및 법인단체
- 입주업체와 계열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가 필요한 연관 업체
-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로 신기술 개발 및 특허 보유업체
- 업종별 배치계획에 부합되고 다른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체
-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체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시납 또는 입주전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업체
- 기존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사업 확장으로 인해 공장용지가 필요한 업체
- 우선순위 외 업체는 입주심사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마. 입주절차(변경)

-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 중 「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 제1호에 의거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적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

바. 사후관리계획

1) 분양용지관리(변경)

- 농공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 관리지침 및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 관리 함
-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름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내에 미 계약 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수출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기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함
- 분양받은 용지의 지적확정 후 필지를 분할코자 할 경우, 개별공장 부지의 최소한도는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최소한도를 유지하여야 함. 단, 관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
- 토지(분할, 분양)최소 한도(변경)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규정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 구역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로 하며, 기타구역은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여 적용하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함

2) 환경관리(변경없음)

-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리기관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 농공단지내 공원과 녹지를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근로자와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3) 안전관리(변경없음)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하여 안전관리,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

4) 기반시설지원(변경없음)

- 농공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사. 조성공사 준공 전 분양에 따른 관리계획(변경없음)

- 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토지의 사용이나 상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이용이 연기 또는 제한 될 수 있음
- 단지 준공 전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 조성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사전에 관리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함
- 분양공고 시 준공 전 관리계획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4. 생산·수출증대 및 고용전망

가. 생산 및 수출증대

- 연도별·품목별생산·수출계획 수립
- 생산·수출에로 타결을 위한 간담회·설명회 등 개최
- 품목별·지역별·해외시장 동향 파악
- 기타 생산·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나. 고용전망

- 농가의 유희 노동력의 흡수로 농외소득증대
- 관내 고교 및 대학졸업자 취업 유도
- 외국인 근로자 확보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
- 취업상담실 운영 등

다. 고용(계획)(변경)

업체수		고 용 인 원								비 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당초	7	158	166	174	183	-	-	-	-	인원은 농공단지 개발계획에 의함
변경	16	-	-	-	-	27	256	486	569	

※ 종사자수 : 공장입주율 연 25% 기준으로 산정

5. 원자재 수급 및 임금소득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가. 원자재 수급

- 인근 산업단지, 대기업 등(광주, 나주, 목포, 광양, 여수 등)에서 원자재 수급
- 대기업, 협력업체를 통한 구매나 자체 구매활동
- 지역 원자재(농·식품류) 최대한 활용

나. 임금소득 전망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금액 (백만원)	당초	2,552	2,681	2,810	2,955	-	-	-	-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기준적용 (시급×8시간×26일×12월)×고용인원
	변경	-	-	-	-	452	4,286	8,137	9,526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기준적용 (시급×8시간×20일×12월)×고용인원

다. 지역주민 소득 전망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금액 (백만원)	당초	2,807	2,949	3,091	3,251	-	-	-	-	
	변경	-	-	-	-	497	4,715	8,950	10,479	

※ 산출근거 : 연도별 임금소득에 연 10%증가 적용

6.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인력수급 방안

가. 입주업체 직종별 인력수급 계획

- 산학 협동체계 구축 인력수급
- 군에서 취업상담 및 구직센터 운영으로 기술인력 수급조절 및 자체 인력수급
- 입주업체의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분양완료년도 기준)

입주예정 업체수(개소)	고용예정인원(명)			비 고
	계	기능인력	노무	
16	569	142	426	※ 기능 인력은 전체인원대비 25% 적용

나. 지역별 인력 수급 계획

- 광주광역시 및 나주시와 인접하고, 관내고교 등을 통해 현지 고용창출
- 외국인 근로자 취업확대를 통하여 필요 인원 적시 수급 확보
- 인력수급 전망(2020년 함평군 통계연보 참조)

(단위 : 명)

인구수(명)			고교재학생(명)			연도별 취업가능 인구수(명)			연도별 취업가능 인구수 산정
계	한국인	외국인	계	남	여	계	주민	고교생	
32,861	32,166	695	901	424	467	1,688	1,643	45	주민 및 고교생은 5%로 산정하여 추정

○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단위 : 천㎡, 개소, 명)

단지명	면적	지정일	준공일	분양률	기동률	입주 업체수	고용현황
계	3개소	-	-	100	84	69	749
학교농공	165	1984.9.7.	1989.12.14.	100	88	26	314
함평농공	103	1990.7.13.	1992.1.22.	100	100	9	115
해보농공	245	2012.2.16.	2014.4.17.	100	65	34	320

7.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시설·운전자금 및 기술지원)(변경)

가. 공장설립 지원계획

-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업무 지원

나. 협력 강화 방안

- 분기 1회 정례 입주업체 대표자 협의회 개최로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 모색

다. 시설·운전자금 지원 방안

자금종류	지원내용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업체당 15억원 이내(시설자금13, 운전자금2)
벤처기업 육성자금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8, 운전자금2)
경영 안정자금	업체당 3억원 이내(우대기업 5억원)
소상공인 창업자금	업체당 1억원 이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지침에 따름

라. 근로자복지사업 계획

- 단지 내 근로자 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 단지 내 근로자 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 도모와 기업행사에 활용토록 제공

마.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
-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제공
- 입주기업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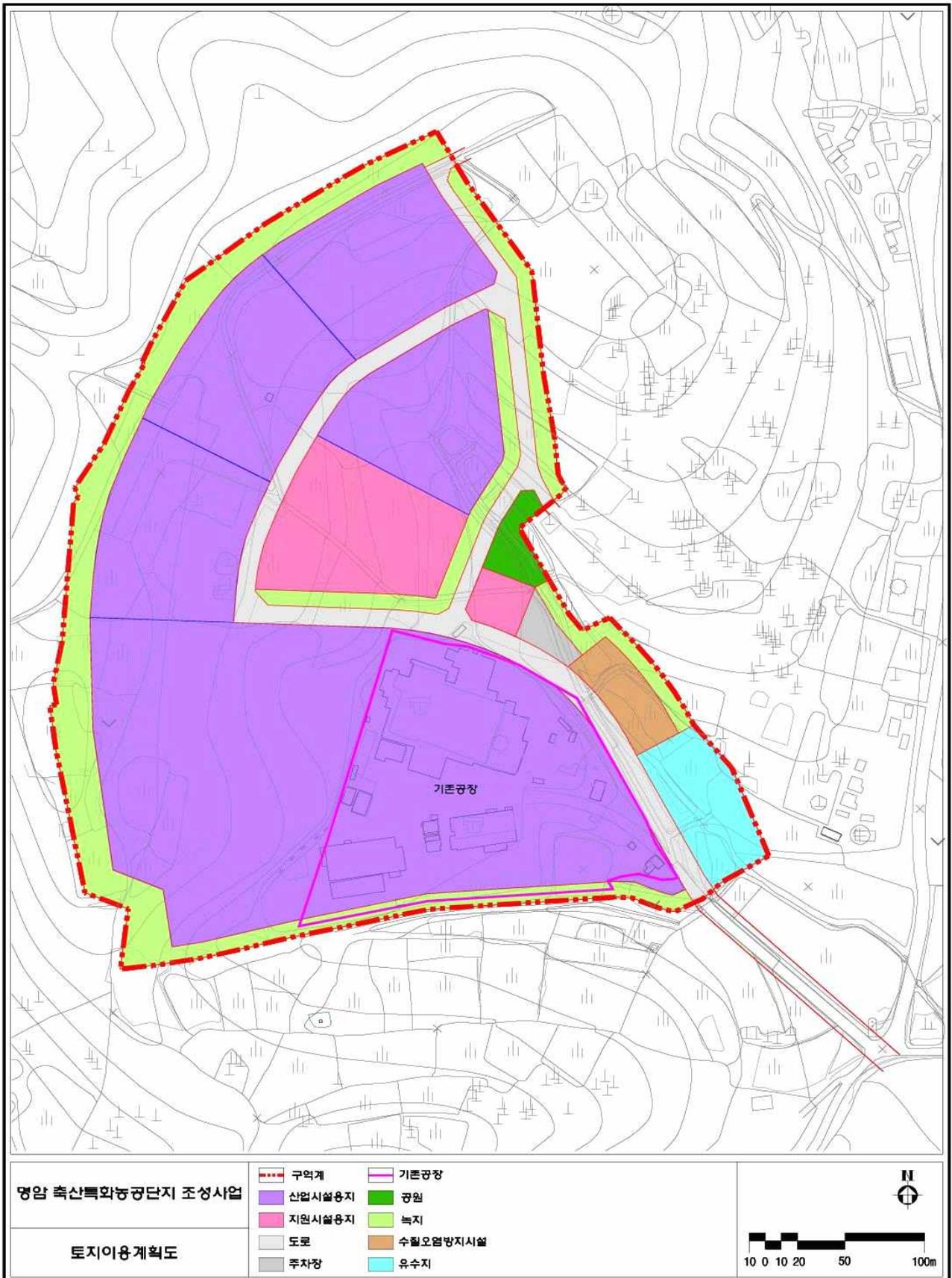
8.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획 및 공장배치 계획

가. 용도별 구획면적(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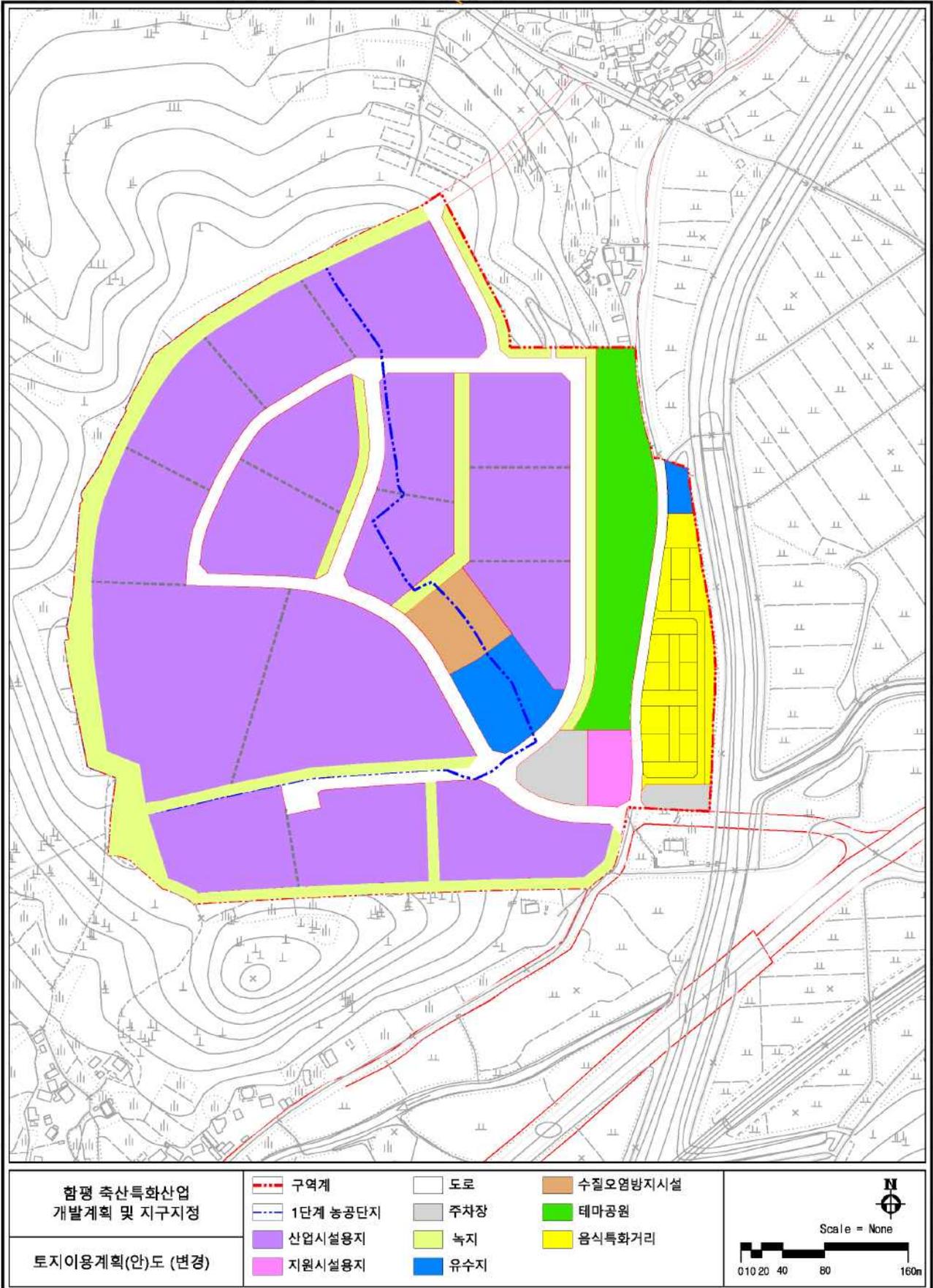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합 계	143,550	증) 175,014	318,564	100.0	
산업시설구역	95,814	증) 99,501	195,315	61.3	
지원시설구역	10,364	증) 7,200	17,564	5.5	
지원시설	10,364	감) 7,313	3,051	1.0	
음식특화거리	-	증) 14,513	14,513	4.6	
공공시설구역	19,621	증) 31,705	51,326	16.1	
도 로	12,147	증) 20,611	32,758	10.3	8% 이상
주차장	863	증) 4,455	5,318	1.7	0.6% 이상
수질오염방지시설	2,258	증) 3,039	5,297	1.7	
유수지	4,353	증) 3,600	7,953	2.5	
녹지구역	17,751	증) 36,608	54,359	17.1	5%~7.5% 미만
공원	1,328	증) 16,148	17,476	5.5	
녹 지	16,423	증) 20,460	36,883	11.6	

나. 용도별 구역도(변경)

○ 당초



○ 변경



다.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여 적용

2) 지원시설구역(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여 적용

3) 공공시설구역(변경)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및 주차장법에 따른 허용가능한 시설

4) 녹지구역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다. 배치기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공장 배치
- 입주업체간에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5.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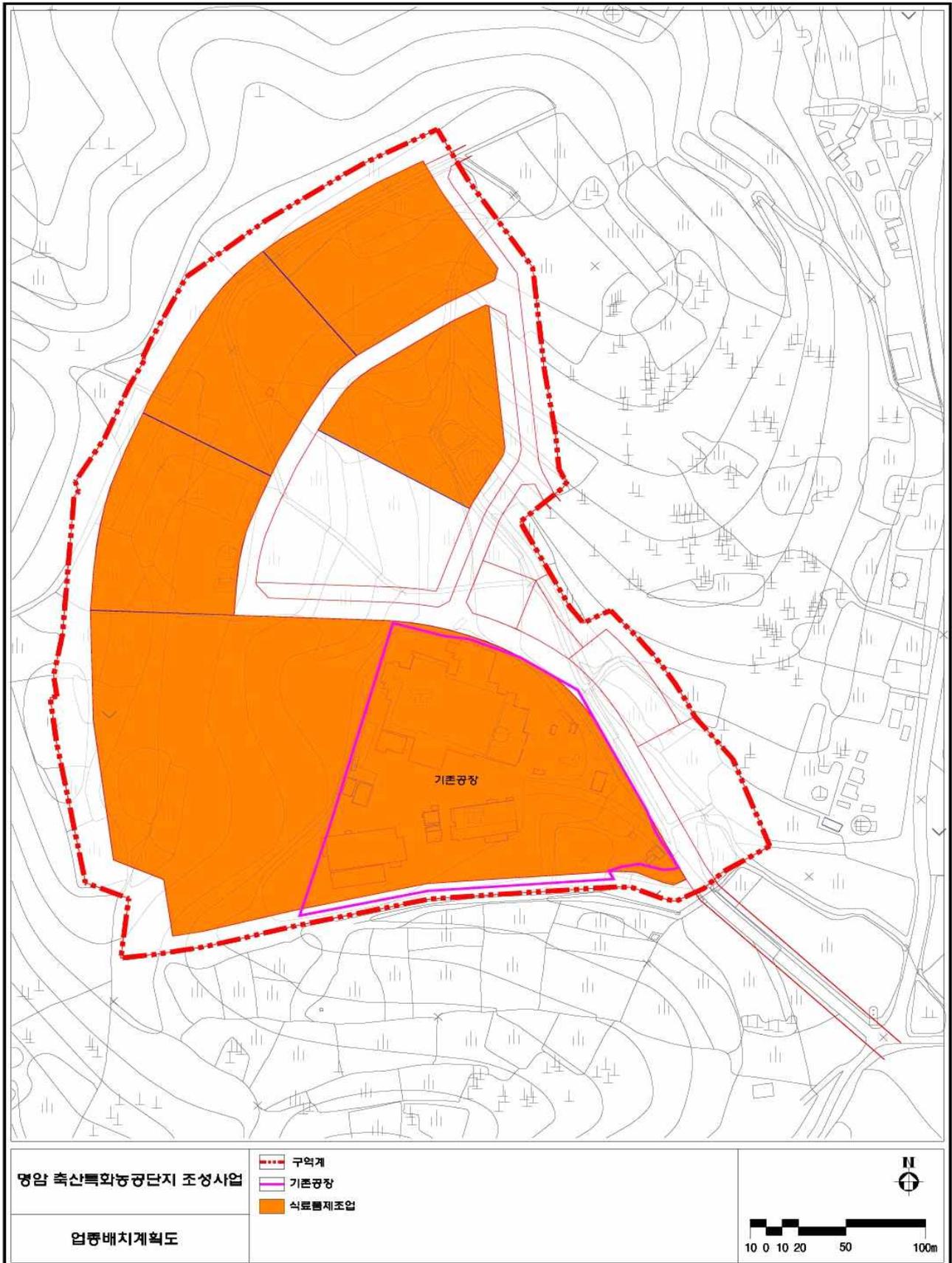
가. 업종별 배치계획

구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식품 제조업	5	95,814	100.0	
변경	식품 제조업(일반)	14	139,095	71.2	
	식품 제조업 (육류 도축업,C10111)	3	56,216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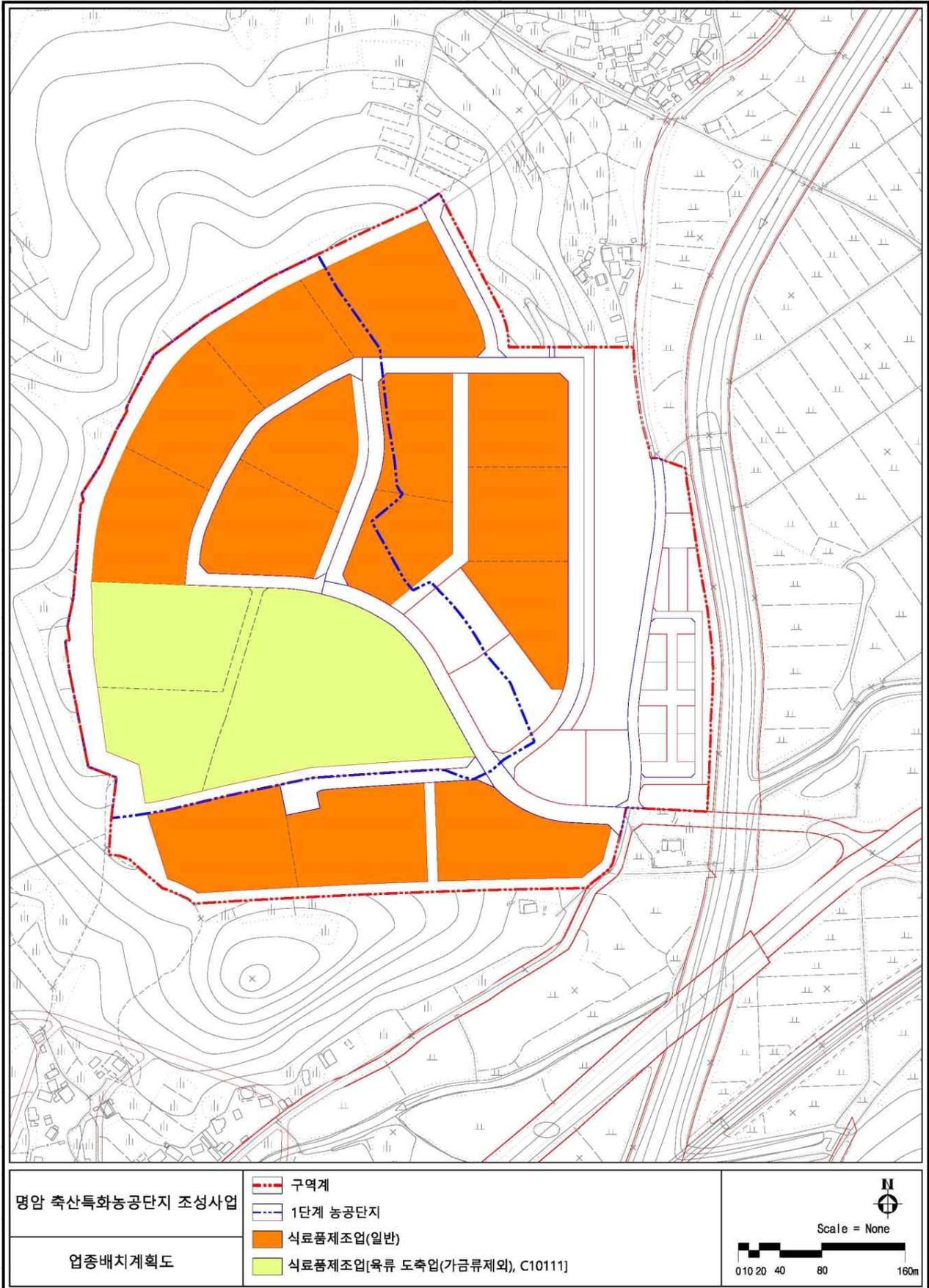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단지 내 건물옥상 및 지붕을 활용하여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가능 : 기타발전업(O35119)

나.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 당초



○ 변경



라. 용도별 공급방법(변경)

구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면적(㎡)	당초	95,814	10,364	37,372
	변경	195,315	17,564	105,685
공급방식		분양(실수요)	분양(임대)	무상귀속

9.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이용건축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용계획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용계획(변경없음)

- 폐수종말처리시설 용량은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량 산정 등 계획용수 공급량에 대하여 오폐수화율과 지하수 유입률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본 농공단지내 일 최대 오·폐수량은 1,744m³/일이나 여유율을 고려하여 1,900m³/일 규모로 계획
- 폐수종말처리장은 지형지세와 부지확보의 용이성, 지장물의 관로영향 및 관거의 연장 등 경제성, 합리성을 포함하여 북서고남동저의 지형경사 및 소하천으로의 방류를 고려하여 농공단지 내 남동쪽에 배치
- 오수는 사업예정지구내 도로의 오수분관을 통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계획하며, 자체 폐수처리시설에 의해 정수된 물은 농공단지 내 계획된 저류시설을 통해 일정기간 저류 후 학교천으로 방류하도록 계획

나. 공동이용건축물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변경없음)

- 공동이용 건축물 및 지원시설의 설치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름

다.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 관리비 징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통합지침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계획은 군수가 입주기업체 협의회와 협의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10. 농공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변경)

가. 농공단지의 관리 운영

-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학교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에 대하여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업체와 지원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입주시켜 효율적으로 관리·육성
- 농공단지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용지의 매각, 임대, 유지, 보수와 개량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

나. 입주기업체의 지원

-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 농공단지의 방재계획 수립 및 시행
 - ① 풍수해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②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③ 공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
 - ④ 농공단지 방호에 관한 사항
 - ⑤ ①~④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녹지조성 등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항은 농공단지 협의회와 협의 후 지원
11. 학교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편입토지(지목별) 현황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구성비(%)		(㎡)	구성비(%)	
답	8	4,195	2.9	27	18,314	5.7	
대	1	45	0.1	7	4,018	1.3	
도	2	266	0.2	48	8,307	2.6	
임	17	63,776	44.4	111	128,797	40.4	
잡	5	61,596	42.9	7	63,480	19.9	
전	26	13,516	9.4	104	91,764	28.8	
기타	1	159	0.1	9	3,884	1.2	묘지,유지,구거
합계	60	143,550	100.0	313	318,564	100.0	

IV. 관계도서 열람

- 관계서류는 함평군 지역개발과(061-320-157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나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23-186호

해남 옥천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해남 옥천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I. 농공단지 개요

1. 관리기관 : 해남군수

2. 조성목적

- 농촌지역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산업시설용지 확보
- 유희인력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창출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산업시설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인 산업배치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농공단지를 조성

3. 조성근거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 소재지

-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605번지 일원

5. 면 적 : 106,270.7㎡ (지정면적 : 103,104㎡ 면적오차정정)

6. 개발기간 : 1989년 ~ 1991년

7. 추진경위

- 농공단지 지정일자 : 1989. 7. 14
- 실시계획승인일(최초) : 1989. 8. 14.
- 착공일자 : 1989. 8. 14.
- 준공인가일 : 1991. 1. 20.

II.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 기본 방향

- 가. 주변지역의 여건 및 업종별 규모 및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공간배분 구상 수립

- 나. 사업지구 특성, 장래 확장개발에 대비한 탄력적 공간체계 구축 및 배치계획
 - 다. 기능별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유연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라. 대규모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공공용지 및 녹지공간의 확보로 친환경적 산업단지 조성
 - 마.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2.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단위 : m², %)

구 분	면적 (m ²)	구성비 (%)	비고
계	106,270.7	100.0	
산업시설용지	83,927.9	78.9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2,076.5	2.0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공공시설용지	20,266.3	19.1	도로, 녹지 등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가. 입주대상업종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시설구역내 입주대상업종은 입주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을 대상으로 함
- 제조업 외 입주기업에 한하여 공장부지 안 건축물(벽면,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114)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임대업(L68)을 입주대상업종으로 함

2) 지원시설구역

- 입주 기업체의 사업지원 및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의 업종 및 지원시설구역 안 건축물(벽면,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114)을 입주대상업종으로 함

3) 입주 제한 업종

-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단,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함.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 각호의 사업장
 -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³ 이상인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13의2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수배출관련 별표5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해남군)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입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나. 입주자격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 및 제43조제6항에 따라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한하여 공장부지 안 건축물(벽면, 지붕)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부동산임대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하며, 입주기업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대사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인 해남군과 사전협의(매입금액 및 임대기간 등)를 거쳐야 함

2) 지원시설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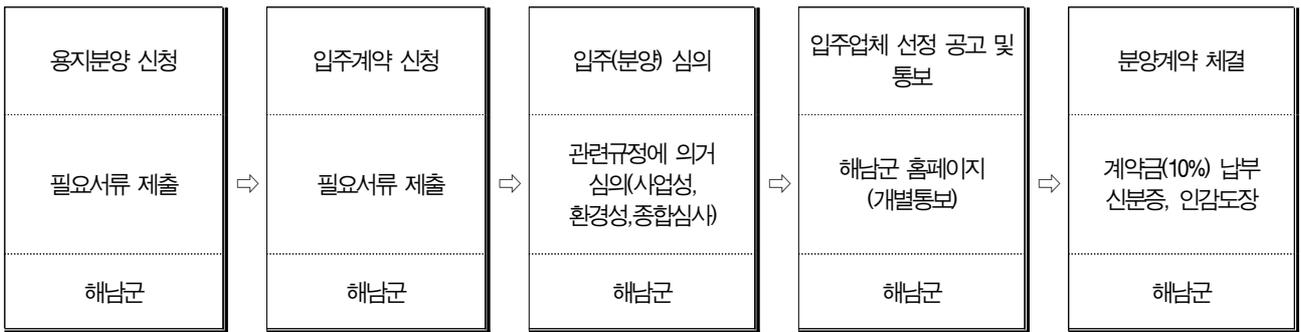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규정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기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입주를 허가하는 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 및 제43조제6항에 따라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 입주 우선순위

- 수도권 및 타 시·군·구에서 본사 또는 공장 이전을 위하여 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체
- 타 지역으로부터 이전 하는 기업
- 지역주민을 50%이상 고용하는 기업체
- 분양대금 일시납 또는 우선 완납하는 기업체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체
- 해남군 소재 기업 중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해남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 업체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음

라. 입주 절차

- 입주신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의한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 제출
- 입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거한 서류심사를 통해 입주업체 선정
- 입주계약체결은 해남군과 입주 공간 확정 및 입주계약 체결
- 입주승인 및 분양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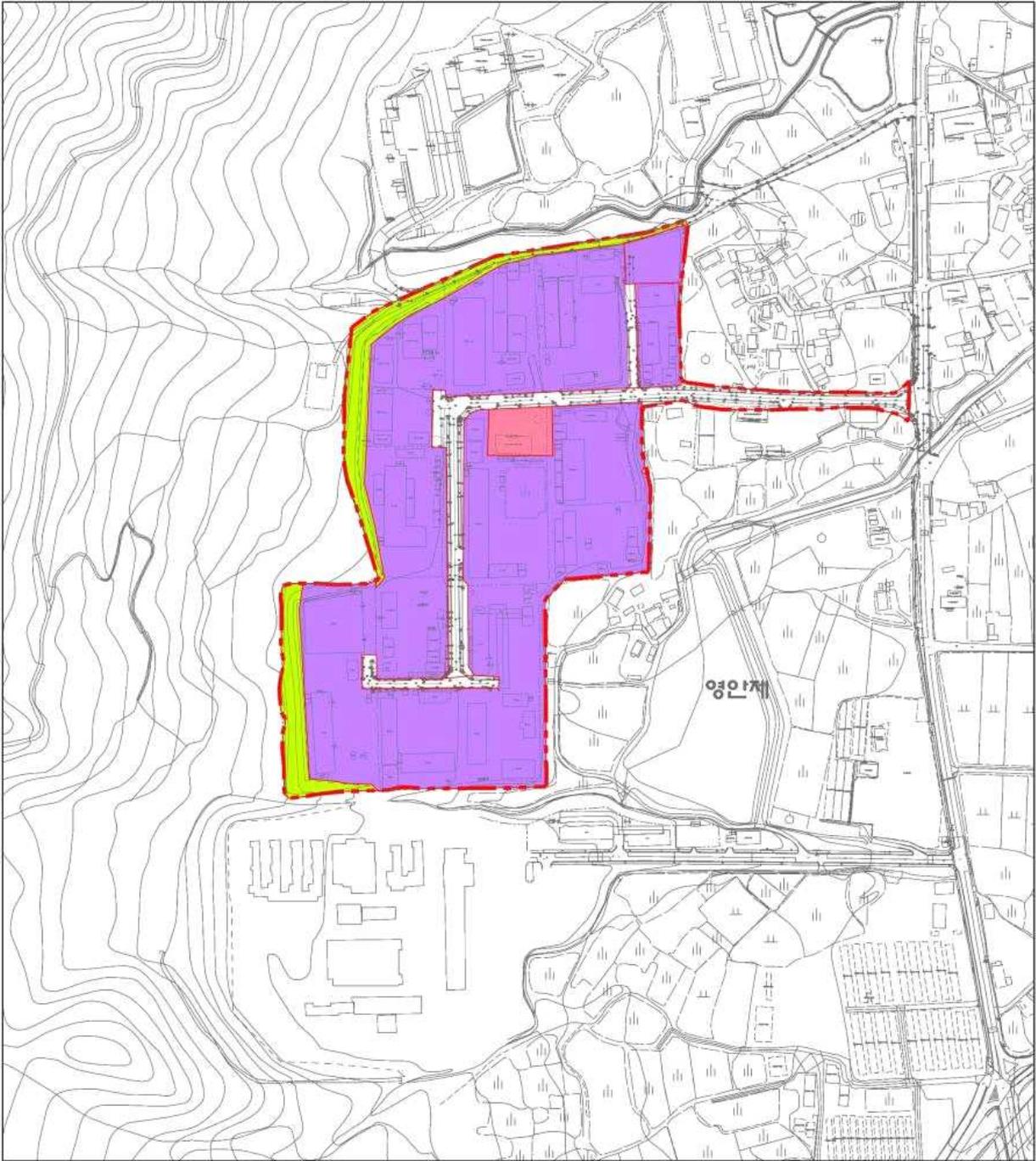
4.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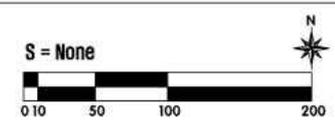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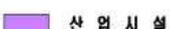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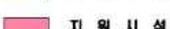
가.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m², %)

구분	총면적	산업 시설 용지	지원 시설 용지	공공시설용지		
				소계	녹지	도로
면적 (m ²)	106,270.7	83,927.9	2,076.5	20,266.3	9,249.2	11,017.1
비율 (%)	100.0	77.2	2.0	19.1	8.7	10.4

나. 용도별 구역도



범 례	 구역 계	해남 옥천농공단지 조성사업 - 토지이용계획도 - 
	 산업 시설	
	 지원 시설	
	 완충 녹지	

다.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단 환경오염 업체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단,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면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2)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단,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면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2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30조 제12호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농공단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시설에 한한다)

5. 업종별 공장의 배치계획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21. 국토교통부)」에 의해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항목에 따라 분류
-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입주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
- 유치업종 선정은 옥천농공단지내 입주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21. 국토교통부)」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항목에 따라 분류
- 유치업종을 선정시 2022. 6. 1. 기준 해남 옥천농공단지내 입주업체 업종을 토대로 유치업종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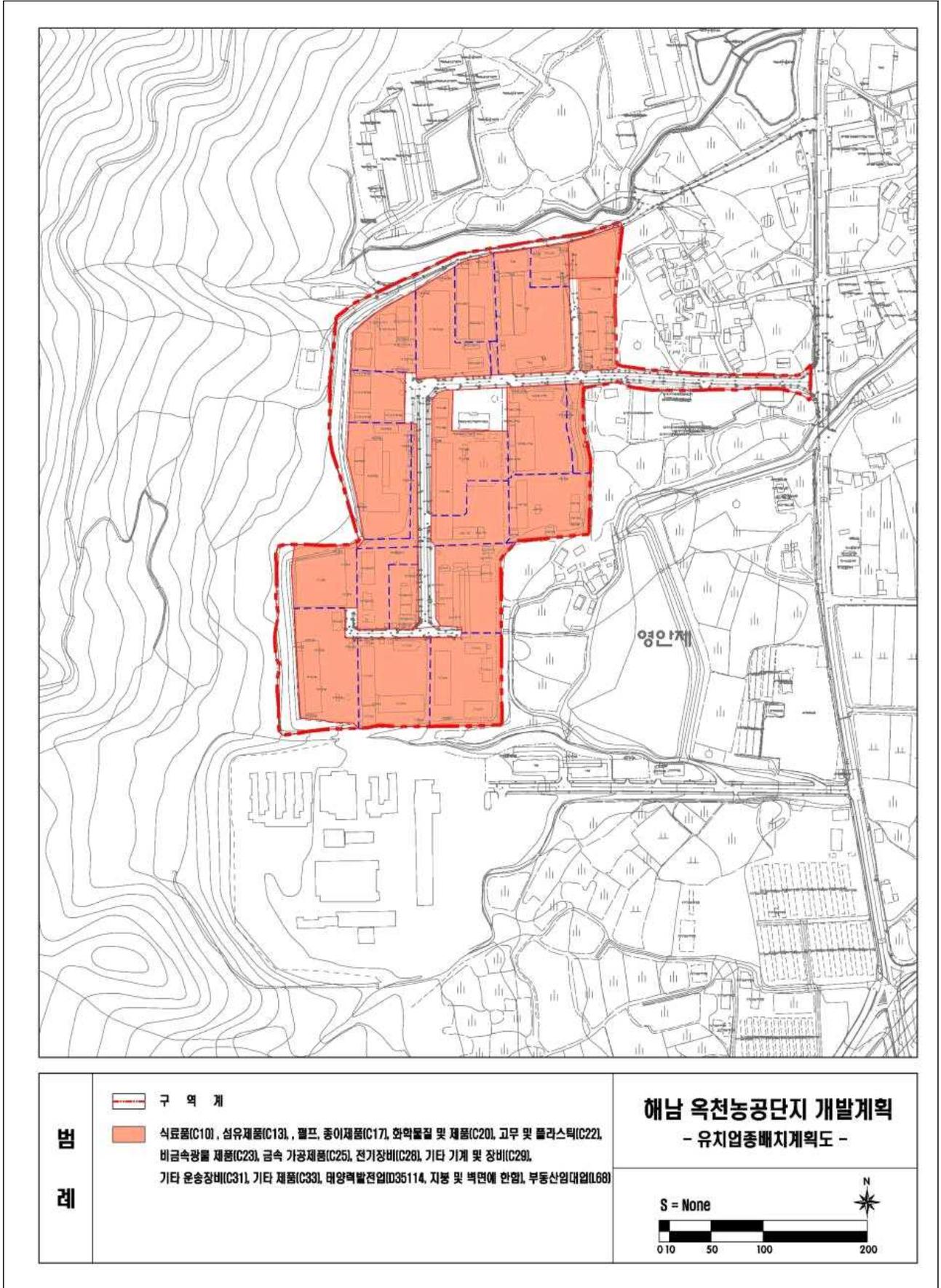
가. 업종별 배치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83,927.9	100.0		
1	C10	식료품 제조업	11,842.9	14.1	
2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7,100.0	8.5	
3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500.0	7.7	
4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3,100.0	3.7	
5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500.0	22.0	
6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3,200.0	15.7	
7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800.0	4.5	
8	C28	전기장비 제조업	8,000.0	9.5	
9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200.0	8.6	
10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00.0	0.7	
11	C33	기타 제품 제조업	4,085.0	4.9	
12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D35114에 한함)	-	-	
13	L68	부동산임대업	-	-	

나. 배치기준

- 22. 6. 1. 기준 옥천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업종을 토대로 유치업종 계획·배치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6. 지원시설의 설치 및 오·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지원시설구역은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고려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 설치운영

나. 오·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오·폐수처리는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직유입 처리(430m³/일)
- 위치 :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97-3번지

7.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분양계획

(단위 : m²)

구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분양 미대상	조성 기간	사 업 시행자
		분양	미분양					
			조성	미조성	소계			
합 계	106,270.7	81,948.0	1,979.9	-	-	22,342.8	1989 ~ 1991 해남군수	
산업시설 용 지	83,927.9	81,948.0	1,979.9	-	-	-		
지원시설 용 지	2,076.5	-	-	-	-	2,076.5		
공공시설 용 지	20,266.3	-	-	-	-	20,266.3		

주) 산업시설용지내 미분양된 획지(1,979.9m²)는 기폐지된 오폐수처리장에서 공장용지로 전환된 획지임(해남군 소유 필지)

나. 입주계획

- 22. 6. 1. 기준 옥천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반영

(단위 : 업체, m²)

구분	입주 업체수		면적	
	계	입주업체	계	입주업체
계	27	27	83,927.9	83,927.9 (100.0)
산업용지	27	27	83,927.9	83,927.9 (100.0)

< 해남 옥천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 업종	면적			비고 (종업원)
				용지 (부지)	제조 시설	부대 시설	
1	(주)신화이에인씨	옥천면 영신리 604-9장	25111	1,414.9	368.32	283.99	
2	올림산업	옥천면 영신리 604-9장	17902	1,414.9	197.6	9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 업종	면적			비고 (종업원)
				용지 (부지)	제조 시설	부대 시설	
3	(주해원)	옥천면 영신리 604-2장 일원	22211	6,849	1,281.5	1,023.6	
4	옥천산업(주)	옥천면 영신리 604-10장 일원	33301	2,987.8	460	30	
5	(주제일정밀산업)	옥천면 영신리 604-3장 일원	22299	170	100	-	
6	(주태웅산업)	옥천면 영신리 604-3장 일원	23321	4,549.8	1716	329.25	
7	(주아트산업)	옥천면 영신리 604-4장 일원	28422	3,129.3	336	846.36	
8	평강개발	옥천면 영신리 604-4장 일원	28123	3,563.7	770.4	846.36	
9	푸른바다	옥천면 영신리 604-7장 일원	20119	2,521	32.64	-	
10	(주대성케미칼)	옥천면 영신리 604-7장 일원	20119	-	99.4	74.88	
11	해양수산산업(주)	옥천면 영신리 604-7장 일원	20119	2,521	492	74.88	
12	(주동원)	옥천면 영신리 604-5장 일원	13225	5,905.3	1,378.56	284.04	
13	에프엘(주)	옥천면 영신리 604-12장 일원	25113	1,663.6	105	105	
14	케이엘텍(주)	옥천면 영신리 604-12장 일원	28422	900	235	75	

자료) 옥천농공단지 공장등록내용(2022. 6. 1.일자 기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 해남 옥천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속) >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 업종	면적			비고 (종업원)
				용지 (부지)	제조 시설	부대 시설	
15	해남두부	옥천면 영신리 604-6장 일원	10794	2,763	492	255	
16	(주유맥)	옥천면 영신리 605장 일원	22232	3,625	2,644	115	
17	(주하이콘)	옥천면 영신리 605-1장 일원	23324	5,797.8	990	121.105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 업종	면적			비고 (종업원)
				용지 (부지)	제조 시설	부대 시설	
18	(주)전원	옥천면 영신리 605-2장 일원	13921	5,703.9	1,950	534.04	
19	디와이웰텍(주)	옥천면 영신리 605-2장 일원	25929	2,645	331	-	
20	(주)뉴텍	옥천면 영신리 605-2장 일원	29169	1,1500	2,047.5	1,153.64	
21	광주정밀기계	옥천면 영신리 605-3장 일원	29199	868	742.5	-	
22	강산이야기 영농조합법인	옥천면 영신리 606-2장 일원	10129	5,119.2	714.6	540	
23	남도기전(주)	옥천면 영신리 606-7장 일원	28123	3,305.0	522.55	-	
24	(주)광명종합상사	옥천면 영신리 606장 일원	17211	4,714.3	782.98	220.5	
25	(주)케이투오스테크	옥천면 영신리 606장 일원	31113	490	314.05	175.95	
26	해남자연농업 영농조합법인	옥천면 영신리 606장 일원	10799	954.82	787.9	166.92	
27	대흥콘크리트(주)	옥천면 영신리 606-1장 일원	23324	4,833.4	989.4	337.82	

자료) 옥천농공단지 공장등록내용(2022. 6. 1.일자 기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다. 입지여건(기반시설)

시 설 명	기반시설 현황 (계획)
도 로	- 주 진입도로는 국도 13호선 도로를 통해 대상지 남측 송운교차로 및 북측 영신교차로에서 분기하여 해남로 를 통해 농공단지내 진입도로인 농공단지길로 접근가능 - 단지내 도로(3개 노선) · 중로3-1(B=8-16m, L=595m) · 소로2-1(B=8m, L=86m), 소로2-2(B=8m, L=129m)
용 수	- 용수량 : 102.9m ³ /일(22년도 사용량 평균치 적용) · 공업용수 83.8m ³ /일, 생활용수 19.1m ³ /일 ·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는 전량 자체수원(지하수) 이용
오·폐수	- 오·폐수량 : 70.3m ³ /일(22년도 평균사용량에서 폐수화율 적용) · 산업폐수 51.4m ³ /일, 생활오수 18.9m ³ /일 · 옥천공공하수처리장에 전량 유입처리(430m ³ /일)
전 력	- 입주업체공급능력 : 154KV, 용량 22MVA · 소요전력은 해남변전소에서 각 입주업체로 공급

시설명	기본시설 현황 (계획)
통신	- 통신공급계획 : 100회선 (산업시설 77회선에 장래여유율 30% 가산)
산업폐기물	- 단지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없으며, 처리대상 폐기물은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라. 분양공고 : 산업시설구역 분양 완료

III. 사후관리계획

1. 목 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내에 미 계약 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수출·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기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리기관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 산업단지 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와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다. 안전관리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하여 안전관리,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

라. 기반시설지원

-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전라남도 고시 제2023-187호

2023년 소규모 수계연결사업(공사) 시행계획 승인 고시

2023년 소규모 수계연결사업(공사)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2023년 소규모 수계연결사업
2. 사업의 목적: 기존 용수공급시설 정비로 가뭄에 대해 선제적 대응
3. 사업의 내용: 양수시설(펌프), 용수관로, 배수로 정비 등

지구명	위 치			사업량(m)	사업비(천 원)			사업기간 (예 정)	사 업 시행자	비고
	사군	읍·면	리동		합계	도비	공사부담			
8개 시군 8지구					7500,00	600,000	150,000			
송정	나주	반남	청송	1식	300,000	240,000	60,000	'23. 5. ~ 11.	나주지사	
버들	구례	광의	방광	460	50,000	40,000	10,000		구례지사	
정천	화순	도암	정천	1식	40,000	32,000	8,000		화순지사	
수동	장흥	관산	외동	-	80,000	64,000	16,000		장흥지사	
우근	해남	송지	우근	1,200	150,000	120,000	30,000		해남완도지사	
미암	영암	미암	선황	302	30,000	24,000	6,000		영암지사	
남면	장성	남	행정	1식	50,000	40,000	10,000		장성지사	
연동	진도	임회	연동	1식	50,000	40,000	10,000		진도지사	

4. 사업의 효과: 미정비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
5. 관련 서류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062-958-2377)

전라남도 고시 제2023-188호

2023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공사) 시행계획 승인 고시

2023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공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2023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공사)
2. 사업의 목적: 수로 내 수초, 퇴적토 등의 정비 불량과 단면 부족으로 인해 침수피해를 유발하는 흙수로를 구조물화

지구명	위 치			사업량(m)	사업비(천 원)			사업기간 (예 정)	사 업 시행자	비고
	사군	읍·면	리동		합계	도비	공사부담			
13개 시군, 33지구				3,598.6	1,000,000	800,000	200,000			
현천	여수	소라	현천	39	20,000	16,000	4,000	23. 5. ~ 12.	여수순천광양지사	
대포	여수	소라	대포	86	25,000	20,000	5,000			
복산	여수	소라	복산	89	25,000	20,000	5,000			
교량1	순천		교량	59	30,000	24,000	6,000			
교량2	순천		교량	58	30,000	24,000	6,000			
대평	순천	월등	대평	165	25,000	20,000	5,000			
한곡	순천	주암	한곡	56	25,000	20,000	5,000			
우산	순천	별량	우산	82	30,000	24,000	6,000			
덕정	순천	별량	덕정	109	30,000	24,000	6,000			
대대	순천		대대	95	30,000	24,000	6,000			
지본	순천	서	지본	84	30,000	24,000	6,000			
운평	순천	서	운평	70	30,000	24,000	6,000			
차사	광양	진월	차사	122	25,000	20,000	5,000			
신금	광양	육곡	신금	49	25,000	20,000	5,000			

지구명	위 치			사업량(m)	사업비(천 원)			사업기간 (예 정)	사 업 시행자	비고	
	사군	읍·면	리동		합계	도비	공사부담				
중옥	담양	대전	중옥	380	50,000	40,000	10,000	23. 5. ~ 12.	담양지사		
해곡	담양	창평	해곡	26	20,000	16,000	4,000				
금산	곡성	입	금산	55	25,000	20,000	5,000	23. 5. ~ 12.	곡성지사		
제월	곡성	입	제월	64	25,000	20,000	5,000				
도암	구례	용방	신도	200	50,000	40,000	10,000	23. 5. ~ 12.	구례지사		
오마1	고흥	도덕	오마	258	50,000	40,000	10,000	23. 5. ~ 12.	고흥지사		
오마2	고흥	도덕	오마	95	30,000	24,000	6,000				
포두	고흥	포두	세동	52	20,000	16,000	4,000				
벌교	보성	벌교	지동	200	50,000	40,000	10,000	23. 5. ~ 12.	보성지사		
광암	무안	일로	광암	39.1	25,000	20,000	5,000	23. 5. ~ 12.	목포무안산인지사		
해제	무안	해제	창매	30.5	25,000	20,000	5,000				
신광	함평	신광	계천	250	50,000	40,000	10,000	23. 5. ~ 12.	함평지사		
남면1	장성	남	월곡	150	30,000	24,000	6,000	23. 5. ~ 12.	장성지사		
남면2	장성	남	월곡	150	30,000	24,000	6,000				
북이	장성	북이	신월	85	40,000	32,000	8,000				
신구1	완도	금일	신구	150	25,000	20,000	5,000	23. 5. ~ 12.	해남완도지사		
신구2	완도	금일	신구	120	25,000	20,000	5,000				
월가	진도	군내	월가	101	40,000	32,000	8,000	23. 5. ~ 12.	진도지사		
임회	진도	임회	삼막	30	10,000	8,000	2,000				

- 3. 사업의 내용: 흙수로 구조물화(개거, 수로관 설치 등)
- 4. 사업의 효과: 흙수로 구조물화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
- 5. 관련 서류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062-958-2377)

전라남도 공고 제2023-53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오영래(순천재활용의류봉사단)				
	주 소	전남 순천시 저전길 919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 ~ 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전라남도 공고 제2023-53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이용섭(순천밀알회)				
	주 소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43-4, 밀알회관 1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전라남도 공고 제2023-5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문영균(사)전남농아인협회				
	주 소	전남 나주시 송월동 1095-9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3-53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박일수(전국산림보호협회화순군지부)				
	주 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8-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2023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10px;">전화번호 :</p> <p style="margin-top: 20px;">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3-53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박종주(해병대전우회전남연합나주시회)				
	주 소	전남 나주시 이창동 161-1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3-53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정간재(동북아문화교류회)				
	주 소	전남 곡성군 옥과면 전남과학대학 우암관 605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전라남도 공고 제2023-53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김원희(통일교육위원회전남협의회)				
	주소	전남 목포시 향동 6-1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당자	문화영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시	2023. 6. 7.(수) 14:00~16:00			장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 출 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조혜란(전통문화놀이협회)				
	주 소	전남 목포시 용당로 301-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조복연(해병대전우회전남연합회)				
	주 소	전남 순천시 연향동 77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김공(한국운동재활협회전남지부)				
	주 소	전남 나주시 대호동252번지 동신대사회과학관 105-417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2023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10px;">전화번호 :</p> <p style="margin-top: 20px;">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조정희(전남국학평화봉사단)				
	주 소	전남 목포시 상동 889-3, 2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김수동(전남6·25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주 소	전남 목포시 용당동 1196-7, 초원용해빌라 203-40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마용철(전남신지식인연합회)				
	주 소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 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 출 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장종식(광양시6·25참전경찰전우회)				
	주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241-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당자	문화영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시	2023. 6. 7.(수) 14:00~16:00			장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박광옥(선한이웃봉사단)				
	주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96-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당자	문화영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시	2023. 6. 7.(수) 14:00~16:00			장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 출 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서양식(광양숲해설가협회)				
	주 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서4길 2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전라남도지사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3-54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천상진(사)한국어마추어무선연맹전남지부				
	주 소	전남 여수시 흥국로 46-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 출 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3-55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김병주(여수사랑청년회)				
	주 소	전남 여수시 신기동 110-13, 3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전라남도 공고 제2023-55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신충호(한국환경보호국민연대전남도지부)				
	주소	전남 순천시 연향동 147-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당자	문화영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시	2023. 6. 7.(수) 14:00~16:00			장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h2>의견제출서</h2>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3-55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박현순(영광사회운동협의회)				
	주소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2-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당자	문화영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시	2023. 6. 7.(수) 14:00~16:00			장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2023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10px;">전화번호 :</p> <p style="margin-top: 20px;">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전라남도 공고 제2023-55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오현석(목포초중고등학교운영위원연합회)				
	주 소	전남 목포시 당기두로13번길 9. 부영아파트2차상가208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 출 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전라남도 공고 제2023-55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문창부(전남복지지원센터)				
	주 소	전남 목포시 죽교동 575-15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전라남도 공고 제2023-55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대상 단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단체소재지(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허방글(대한안전연합전남중앙본부)				
	주 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송산3길 23, 신명품빌라 상가1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청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부서명	도민행복소통실	담 당 자	문화영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2323
	일 시	2023. 6. 7.(수) 14:00~16:00			장 소	청문장 (12층)
	청문주재자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또는 주무관 김안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6. 5.(월) 18:00까지
- 제출처: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우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전라남도 공고 제2023-564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1	유한회사 한빛소방	손현석	전남 순천시 해룡면 울산길 120	소방시설관리업	제전남(순천)- 2023-0001호	2023. 4. 27.

전라남도 공고 제2023-569호

측량업 신규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측량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 측량업 신규등록 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등록일자	비 고
일반측량업 (04-005366)	유한회사 합진 (서00)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평동1길 5, 1층	2023. 4. 28.	

전라남도 공고 제2023-571호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일정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발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1. 제 목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3. 5. 4. ~ 2023. 5. 19.(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일정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등록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지천산업개발(주) / 대표 김*민 /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3호 -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산림사업법인 [지천산업개발(주)] 등록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3호 -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6. 청 문	기관명	전라남도청	담당자	산림보전과 정은재 (061-286-7523)	
	일시장소	2023. 5. 24(수) 10: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청문장(행정동 12층)			
	주재자	소 속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직위 및 성명		법제팀장 황국주 또는 주무관 김안나			
7. 청문참석 시 지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서본) ■ 대표이사 불참 시 위임받은 직원이 위임장 지참시 대리참석 가능 			

청문 일정 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등록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지천산업개발(주)				
	주 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3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3호 -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5. 법적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3호				
6. 청 문	기관명	전라남도청	담당부서	산림보전과	담당자	정은재
	주 소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 동부지역본부 산림보전과		전화번호	061-286-7523	
	일 시	2023. 5. 24. (수) 10:00~		청문장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청문장(행정동 12층)	
	주재자	소 속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직위 및 성명	법제팀장 황국주 또는 주무관 김안나			
6. 청문참석 시 지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표이사 불참 시 위임받은 직원이 위임장 지참시 대리참석 가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 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3-57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등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 5. 4.

전라남도지사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요사업	비고
제2007-1- 전라남도-47호	신안군여성 단체협의회	신안군 압해읍 중촌길 8	안미영	- 회원단체 간 사업협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교환 - 여성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 정부와 사회에 대한 여성의 의견 반영 및 건의 -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표자 변경

목포시 고시 제2023-65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중로1-2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목포시 석현동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사업명 : 석현동 근화네오빌 옆 도로 확장 공사】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5. 4.

목포시장

■ 실시계획 고시 내용

항 목	구 분	고 시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석현동 816-55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 업 명 : 석현동 근화네오빌 옆 도로(중로1-26호선) 확장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금회 사업 : 중로1-26호선 도로개설 확장공사 (B=20m, L=200m, A=3,322㎡)	
4.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 성 명 : 목포시장(도시디자인과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 착수일 : 2023. 5. 4.(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 예정일 : 202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 생략(도시디자인과 비치)	
8. 실시계획 램·공고		○ 열람기간 : 2023. 3. 16. ~ 2023. 3. 30.(14일간) ○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	완료
9. 기타 문의		○ 문의 전화 : 061-270-8873, 3447(도시디자인과)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정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계				21,671	3,322					
1	석현	816-50	도	12,873	247	공	목포시			
2	석현	1033-5	대	52	52	국	국토교통부			
3	석현	815-88	장	952	86	공	목포시			
4	석현	815-16	도	6,955	2,098	공	목포시			
5	석현	815-55	장	839	839	공	목포시			

편입 지장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목포시 석현동	816-50	도	우수맨홀		2	EA		목포시	
				통신맨홀		1	EA			
				가스맨홀		1	EA			
				제수변		1	EA			
				반사경		1	EA			
2	목포시 석현동	1033-5	대	통신주		1	EA		국토교통부	
				한전주		1	EA			
				소화전		1	EA			
3	목포시 석현동	815-16	도	통신주		3	EA		목포시	
				한전주		4	EA			
				우수맨홀		3	EA			
				통신맨홀		1	EA			
				수목	미루나무2 느티나무3 은행나무3	8	EA			
4	목포시 석현동	815-55	장	오수맨홀		1	EA		목포시	
				수목	소나무	159	EA			

목포시 공고 제2023-769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중로1-17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1. 목포시 연산동 618-4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사업명 : 삼진산단 주변 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5. 4.

목포시장

■ 공사완료 공고 내용

구분	고 시 내 용	비 고
항목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연산동 618-43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명칭 : 삼진산단 주변 도로 개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 L=60.0m, B=20.0m, A=1,198㎡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목포시장(도시디자인과장)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목포시청)]	
5. 사업착수 및 준공보고일	○ 사업착수일 : 2018. 04. 05. ○ 공사완료일 : 2019. 12. 31.	
6. 토지 세목 조서	○ 다 음	
7. 준공 도서	○ 관계도서 : 게재 생략(도시디자인과 비치)	
8. 기타 문의	○ 문의전화 : 061- 270- 8873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 061- 270- 3447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정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등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	변경								
합계					3,790	1,198					중료 1-17
1	연산	618-43	618-43	도	2,495	20	공유지	목포시			지적 공부 정리 완료
2	연산	618-44		염	129	129					
3	연산	618-59		염	399	399					
4	연산	618-51		대	455	455					
5	연산	618-54		염	41	2					
6	연산	618-58		염	124	124					
7	연산	618-49		도	147	69					

순천시 공고 제2023-1021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사업 완료 공고

순천시 가곡동 10-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대로 2-3호 외1, 완충녹지 201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완료 공고합니다.

2023. 5. 4.

순천시장

1. 위 치 : 순천시 가곡동 10-1번지 일원
2.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 완료 사항

명 칭	종류	규 모		사업시행자		인가기간
		시설명	면적(도로제원)	주 소	성 명	
가곡동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완충녹지) 사업	계		4,651.1㎡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3 (마북동)	(주)디케이원 (류희석)	2020.10.15. ~ 2023.4.30.
	도로	대로 2-3호	951㎡ (L=191m, B=30-35m)			
		소로 1-402호	1,160.6㎡ (L=120m, B=10m)			
	완충 녹지	완충녹지 201호	2,539.5㎡			

3. 관계도서는 순천시청 도시계획과(☎ 061-749-63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주시 고시 제2023-75호

나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1번지 일원에 나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나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4.

나주시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지형도면 조서: 다음
2.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도시과(☎ 061-339-897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나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1. 문화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90	나주영상 테마파크	문화 공원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1번지 일원	145,789	감)145,789	-	전라남도고시 제2007-94호 (2007.8.3.)	

2. 문화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90	나주영상 테마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1번지 일원 · 면적 : 145,789㎡(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을 건립 추진을 위해 기 결정되어 있는 나주 영상테마파크 공원 폐지

광양시 고시 제2023-145호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성황동 구간의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5. 4.

광양시장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37	10	국지 도로	2,133	대로1-1호	소로 2-203호	일반 도로	동광양	1998. 4. 28.	
변경	소로	1	137	10	국지 도로	2,170	대로1-1호	소로 3-701호	일반 도로	동광양	〃	
기정	소로	2	203	8	국지 도로	1,475	소로 1-137호	소로 3-357호	일반 도로	-	2017. 11. 30.	
변경	소로	3	701	7.5	국지 도로	1,355	소로 1-137호	소로 3-357호	일반 도로	-	〃	

2) 도로 결정(변경)(안)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1-137	소로 1-137	•도로종점 및 도로선형 변경 -연장: 기정)2,133m 변경)2,170m -폭: 10m	소로2-203호선 실시설계에 따른 지역 주민과 영산강청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점동마을구간의 도로종점과 도로선형의 변경
소로 2-203	소로 3-701	•도로 선형의 변경 -연장: 기정)1,475m 변경)1,355m -폭: 기정)8m 변경)7.5m	소로2-203호선 실시설계에 따른 지역 주민과 영산강청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도로 선형 및 폭 원 변경

2. 관계 도서 :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061-797-3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3-150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213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524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213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4.

광양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5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광양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213호) 사업
 - 명 칭: 봉강면 부암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3,02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광양시장(교통과장)
 - 주 소: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 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 예정일: 202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계				4,966	3,025					
1	조령	522-8	도	1,060	144	국유지	전라남도			
2	조령	522-5	답	677	677	서울 성동구 마장로 ***-**(마장동)	박*순 외 2인			
3	조령	522-10	잡	1,206	181	광양시 봉강면 필동길 *	백*화	순천시 연향3로 47(연향동)	순천광양 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4	조령	522-9	답	186	186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	황*연			
5	조령	525	답	98	98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	황*연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6	조령	524	답	1,739	1,739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82, *동 ***호(주공목성아파트)	이*례 외 11인			

7. 관계도서: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교통과(☎061-797-2871) 및 도시재생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3-151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제56호)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시 중동 1358-1번지의 광양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56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4.

광양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광양시 중동 1358-1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56호)사업
 - 명 칭: 견인차보관소 공용차고지 설치공사
-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3,77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광양시장(교통과장)
 -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 5.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3. 6. 30.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내용	성명	주소	
1	광양시 중동	1358-1	잡	3,770	3,770		광양시				
소계				3,770	3,770						

- 7. 관계도서: 게재 생략(광양시청 교통과 및 도시재생과 비치)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교통과(☎061-797-2176) 및 도시재생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3-153호

광양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제9호)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제9호)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4.

광양시장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문화시설(도서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문화시설	도서관	마동 1059-1번지	2,000	증 0.4	2,000.4	2022. 3. 17.	

II. 실시계획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광양시 마동 1059-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제9호)사업
- 명 칭: 광양 마동도서관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2,000.4㎡
- 규 모: 도서관 1개동(지상2층/건축면적 853.51㎡/연면적 1,441.0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광양시장(도서관운영과장)
-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5.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	마동	1059-1	학	2,000.4	2,000.4	광양시		

7. 관계도서: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서관운영과 및 도시재생과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서관운영과(061-797-2539) 및 도시재생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공고 제2023-1007호

광양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제13호, 소로3-670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167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제13호, 소로3-670호선)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23. 5. 4.

광양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16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제13호, 소로 3-670호선)사업
 - 명 칭: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4,268㎡(공공청사 3,882㎡, 도로 386㎡)
 - 규 모: 건축면적 514.24㎡, 연면적 739.8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광양시장(건설과장)
 -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19. 12. 26. ~ 2022. 12. 31.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3446) 및 도시재생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진군 공고 제2023-432호

도시계획도로 중로2-3(중양초-동일제재소) 보상계획(열람) 공고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2-3(중양초~동일제재소)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23. 5. 4.

강진군수

1. 사업 개요

- 가. 사업명 : 도시계획도로 중로2-3(신성사거리~동일제재소) 개설공사
- 나. 위치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평동리 일원
- 다. 사업량 : L=520m, B=15.0m
-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5.12.31.(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마. 사업시행자 : 강진군수

※ 자세한 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통지

2. 보상내용

- 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지장물) 등에 대한 권리 일체
- 나. 토지 및 물건 :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569-11번지 등 16필지 및 물건 등

3.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3. 5. 4. ~ 2023. 5. 19.
- 나. 열람장소 : 강진군 건설과 도시경관팀(☎ 061-430-3992)
-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 라.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마. 토지·물건조서 확정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물건 등 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며, 누락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

4. 보상계획

-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 ※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계획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거나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 등은 보상 을 하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청구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 실시
- 나.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금액의 산술 평균가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

-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면적의 1/2이상 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강진군청 건설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 입		소유자		성명 (날인)	전화번호 (주택 및 휴대폰)	평가업자
	지 번	면적(㎡)	주 소	서 명			

다. 협의조건 :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께서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가.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나. 보상대상 토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미 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다.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열람내용의 일부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강진군 건설과 도시경관팀(☎061-430-3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읍면	리					주 소	성 명	
66	강진	서성	569-11	구	1,953	70	국(건설부)	국유지	
67	강진	서성	55	대	180	2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복수로 116,1*6동4*6호 (배*자이2차북*마을)	장*훈	
68	강진	서성	574	도	155	122	국(건설부)	국유지	
69	강진	평동	242	답	350	49	242	장*순	
70	강진	평동	240	대	155	81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을 평*리 2*0	장*례	
71	강진	평동	239-8	대	608	11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32-6 현*아파트 1*7-7*6	이*애 외2인	이*영,이*영
72	강진	평동	239-17	대	11	11	평*리 239	마*섭	
73	강진	평동	239-16	대	135	106	평*리239	마*섭	
74	강진	평동	239-5	대	337	183	평*리239	마*섭	
75	강진	평동	239-11	도	89	89	강진군	군유지	
76	강진	평동	239-27	대	56	12	강진군	군유지	
77	강진	평동	215-7	학	471	129	강진군	군유지	
78	강진	평동	336-8	도	4,016	484	국(건설부)	국유지	
79	강진	평동	215-1	학	22,470	9	전라남도(교육감)	기타	
80	강진	서성	575	도	5,809	87	국(건설부)	국유지	
81	강진	서성	48-36	도	143	11	강진군	군유지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공부상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6	평동리 239-5	기초	무근Con'c	8.64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2*9	마*섭	
		벽체	Con'c블럭	12.68				
		지붕	양철	51.90				
		마당	무근Con'c	4.02				
7	평동리 239-8	기초	무근Con'c	8.6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32-6 현*아파트 1*7-7*6	이*애, 이*영, 이*영	
		벽체	Con'c블럭	23.34				
		지붕	기와	126.70				
8	평동리 240	기초	무근Con'c	12.80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0	정*례	
		벽체	무근Con'c	16.91				
		지붕	스레트	16.14				
9	평동리 242	기초	무근Con'c	26.38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2	정*순	
		벽체	무근Con'c	18.69				
		지붕	스레트	111.32				

강진군 공고 제2023-439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성전 명동지구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23. 5. 4.

강진군수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성전 명동지구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나. 사업시행자 : 강진군수

다. 사업목적 및 개요

○ 목 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과 농업용수 손실 최소화로 영농편의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산574번지
- 수혜면적 : 37ha
- 총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400, 군비 100)
- 사업기간 : 2023. 8. ~ 2023. 12.
- 주요사업
 - 제 방 : 덧쌓기 7,800㎡, 사석설치 2,800㎡, 그라우팅 40공
 - 복통및사통 : 복통 개축
 - 여 수 로 : L=35.0m

2. 보상내용

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지장물) 등에 대한 권리 일체

나. 토지 및 물건 : 전남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산109번지 등 5필지(토지조서 붙임)

3.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3. 5. 4. ~ 2023. 5. 19. (15일)

나. 열람장소 : 강진군 건설과 농업기반팀 ☎ 061-430-3394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라.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마. 토지·물건조서 확정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물건 등 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며, 누락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계획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거나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 등은 보상을 하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청구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 실시

나.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금액의 산술 평균가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
-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면적의 1/2이상 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 입		소유자		성명 (날인)	전화번호 (주택 및 휴대폰)	평가업자
	지 번	면적(㎡)	주 소	서 명			

다. 협의조건 :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께서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5. 기타사항

가. 보상대상 토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미 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열람내용의 일부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강진군 건설과 농업기반팀(☎061-430-3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명동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읍·면	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계					52,320	3,955						
1	성전	명산	산106-3	유	198	198	전남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381	이O현				
2	성전	명산	산106-2	임	27,625	309	전남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381	이O현				
3	상잔	명산	산105-2	임	4,264	467	전남 강진군 군동면 안지동길 13-4	김O수				
4	성전	명산	산105-1	임	5,455	2,177	전남 강진군 군동면 안지동길 13-4	김O수				
5	성전	명산	산109-1	유	4,165	773	-	김O진				
6	성전	명산	산109	임	10,612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시읍 서재로 120, 108동 101호	김O승				

무안군 고시 제2023-52호

무안 군계획시설(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3년 남악 철도변 기후대응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무안 군계획시설(완충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4.

무안군수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3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완충녹지)사업
 - 명칭 : ‘23년 남악 철도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완충녹지 : 15,09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무안군수
 - 주 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산림공원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7. 기타 사항은 무안군청 산림공원과(061-450-5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현황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삼향읍 남약리	합계	15,094.0	15,094.0						
1	2634	공	6,248.8	6,248.8	무안군					
2	2635	공	8,845.2	8,845.2	무안군					

무안군 공고 제2023-478호

**‘몽탄면 사천리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을 위한
군관리계획(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열람 공고**

무안 몽탄면 사천리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3. 5. 4.

무안군수

1. 계획의 내용

- 계획명 : 몽탄면 사천리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 위치 :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304-1번지 일원
- 면적 : 63,389㎡
- 시행예정자 : 주식회사 캠프밸리

2. 열람개요

- 열람내용 : 무안 군관리계획(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열람방법 : 무안군 홈페이지(<http://www.muang.go.kr/>), 무안군 지역경제과, 몽탄면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일간, 공휴일·토요일은 공람기간 제외)

3.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간: 공람기간 내(2023. 5. 4. ~ 2023. 6. 1.)
- 제출방법: 무안군 지역경제과, 몽탄면에 서면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지역경제과(061-450-5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몽탄면 사천리 복합물류단지 군관리계획(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485,157,502.0	-	485,157,502.0	100.00	
도시지역		207,421,083.8	-	207,488,042.3	42.76	
주거 지역	소계	7,659,657.8	-	7,659,657.8	1.58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660.1	-	100,660.1	0.02	
	제2종전용주거지역	85,833.0	-	85,833.0	0.02	
	제1종일반주거지역	2,917,240.8	-	2,917,240.8	0.60	
	제2종일반주거지역	1,997,675.3	-	1,997,675.3	0.41	
	제3종일반주거지역	1,535,697.4	-	1,535,697.4	0.32	
	준주거지역	1,022,551.2	-	1,022,551.2	0.21	
상업 지역	소계	1,042,131.9	-	1,042,131.9	0.21	
	중심상업지역	290,376.0	-	290,376.0	0.06	
	일반상업지역	751,755.9	-	751,755.9	0.15	
	근린상업지역	0.0	-	0.0	0.00	
	유통상업지역	0.0	-	0.0	0.00	
공업 지역	소계	637,214.3	-	637,214.3	0.13	
	전용공업지역	0.0	-	0.0	0.00	
	일반공업지역	407,656.0	-	407,656.0	0.08	
	준공업지역	229,558.3	-	229,558.3	0.05	
녹지 지역	소계	21,809,571.8	-	21,809,571.8	4.50	
	보전녹지지역	245,410.0	-	245,410.0	0.05	
	생산녹지지역	2,412,282.0	-	2,412,282.0	0.50	
	자연녹지지역	19,151,879.8	-	19,151,879.8	3.95	
관리 지역	소계	176,272,508.0	증)20,391	176,339,466.5	36.34	
	보전관리지역	48,295,862.0	감)7,084	48,288,778.0	9.95	
	생산관리지역	37,898,130.0	감)35,914	37,862,216.0	7.80	
	계획관리지역	90,078,516.0	증) 63,389	90,188,472.5	18.59	
농림지역		194,682,091.2	감)20,391	194,661,700.2	40.13	
자연환경보전지역		83,054,327.0	-	83,007,759.5	17.11	
미지정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율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몽탄면 사천리 산20-3임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7,084	100	물류창고 등 산업 유통 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창출을 위하여 용도지역 을 변경
㉡	몽탄면 사천리 767전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5,914	100	
㉢	몽탄면 사천리 408답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0,391	100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몽탄면 사천리 304-1 일원	-	증63,389	63,38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	몽탄면 사천리 304-1일원	63,389㎡	기존 물류창고와 더불어 인근지역에 추가물류창고 및 연수시설 등 물류 시설단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자함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교통시설

· 도로 총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705	6,037	-	-	-	2	705	6,037	-	-	-
소로	2	705	6,037	-	-	-	2	705	6,037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	8~10	국지도로	618	몽탄면 사천리 926 구역경계	몽탄면 사천리 769 일원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87	몽탄면 사천리 940 일원	몽탄면 사천리 420 구역경계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1	신설 - 연장 : 618m - 폭원 : 8~10m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 결정에 따른 내부도로 신설
-	소로 2-2	신설 - 연장 : 87m - 폭원 : 8m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 결정에 따른 내부도로 신설

② 공간시설

· 소공원 (변경)

- 소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사천리 409-2 일원	-	증3,967	3,967	-	-

· 소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신설 - 면적 : 3,967㎡	물류시설단지 내 쉼터기능 할 수 있는 소공원 조성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총괄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시 설 명	용지구분
	합계	53,385		53,385		
	A	13,583	A-1	11,568	연수원	유통용지
			A-2	1,604	조성녹지	녹지용지
			A-3	411	조성녹지	녹지용지
	B	19,326	B-1	6,082	연구소	유통용지
			B-2	1,847	조성녹지	녹지용지
			B-3	6,180	조성녹지	녹지용지
			B-4	5,217	기숙사	주거용지
	C	8,168	C-1	6,984	물류창고	유통용지
			C-2	1,184	조성녹지	녹지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시 설 명	용지구분
	D	6,721	D-1	3,695	업무시설	유통용지
			D-2	3,026	주차장	공공시설용지
	E	5,587	E-1	5,106	물류창고	유통용지
			E-2	481	오수처리장	공공시설용지

②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변경 결정 조서

· 주거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시 설 명	용지구분
	합계	5,217		5,217		
	B	5,217	B-4	5,217	가숙사	주거용지

· 유통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시 설 명	용지구분
	합계	33,435		33,435		
	A	11,568	A-1	11,568	연수원	유통용지
	B	6,082	B-1	6,082	연구소	유통용지
	C	6,984	C-1	6,984	물류창고	유통용지
	D	3,695	D-1	3,695	업무시설	유통용지
	E	5,106	E-1	5,106	물류창고	유통용지

·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시 설 명	용지구분
	합계	13,511		13,511		
	D	3,026	D-2	3,026	주차장	공공시설용지
	E	481	E-2	481	오수처리장	공공시설용지
	-	3,967	-	3,967	공원	공공시설용지
	-	6,037	-	6,037	도로	공공시설용지

· 녹지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시 설 명	용지구분
	합계	11,226		11,226		
	A	2,015	A-2	1,604	조성녹지	녹지용지
	A-3	411	조성녹지	녹지용지	연구소	유통용지
	B	8,027	B-2	1,847	조성녹지	녹지용지
	B-3	6,180	조성녹지	녹지용지	업무시설	유통용지
	C	1,184	C-2	1,184	조성녹지	녹지용지

○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	B-4	용도	허용	무인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2호 공동주택 라목 기숙사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율	100%이하	
		높 이	2층이하	
		배 치	지형 및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가능한 남향배치 권장	
		형 태	농촌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사지붕 및 전원주택 형태를 권장	
		색 채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사용, 기급적 원색지양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명도와 채도를 낮추어 사용)	

② 유통용지

· 연수원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	A-1	용도	허용	· 무인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0호 교육연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 40% 이하	
		용 적 율	· 100%이하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지형 및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가능한 남향배치 권장	
		형 태	· 농촌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	
색 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사용, 기급적 원색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명도와 채도를 낮추어 사용)			

· 연구소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	B-1	용도	허용	• 무안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0호 교육연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 40% 이하	
		용 적 율	• 100%이하	
		높 이	• 2층이하	
		배 치	• 지형 및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가능한 남향배치 권장	
		형 태	• 농촌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	
		색 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사용, 기급적 원색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명도와 채도를 낮추어 사용)	

· 물류창고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	C-1 E-1	용도	허용	• 무안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8호 창고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율	• 100%이하	
		높 이	• 2층이하	
		배 치	• 지형 및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가능한 남향배치 권장	
		형 태	• 농촌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	
색 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사용, 기급적 원색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명도와 채도를 낮추어 사용)			

· 업무시설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	D-1	용도	허용	• 무안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4호 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 40% 이하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용 적 율	• 100%이하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지형 및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가능한 남향배치 권장
		형 태	• 농촌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
		색 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사용, 가급적 원색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명도와 채도를 낮추어 사용)

③ 공공시설용지
• 오수처리시설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	E-2	용도	허용	•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 40% 이하	
		용 적 율	• 100%이하	
		높 이	• 1층이하	
		배 치	• 지형 및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가능한 남향배치 권장	
		형 태	• 농촌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	
		색 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사용, 가급적 원색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명도와 채도를 낮추어 사용)	

몽탄면 사천리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서

계 획 명	몽탄면 사천리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사업장 위치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304-1번지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에 관한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영광군 고시 제2023-39호

영광군계획시설(장사시설)사업 토지 등의 세목(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영광군 고시 제2022-104호(2022. 11. 10.)로 고시된 “영광군계획 시설(장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고시합니다.

2023. 5. 4.

영광군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522번지 일원
- 면적 : 92,593㎡
- 개발기간 : 2022년 ~ 2025년
- 사업시행자 : 영광군수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조서 : 다음

3. 토지 세목 변경사유 : 분할 측량 결과 및 누락 지장물 반영

4. 기타 사업내용은 기 고시된 내용과 같음.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영광	군남	대덕	산266-1	임	607	101	영광군	-	-	-	-	변경 없음
2	영광	군남	대덕	산266	임	1,674	18	광주이씨 ○○종중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489	-	-	-	당초
				산266-2	임	17	17	광주이씨 ○○종중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489	-	-	-	변경
3	영광	군남	대덕	505-*4	전	82	82	영광군	-	-	-	-	변경 없음
4	영광	군남	대덕	505-3	도	260	129	영광군	-	-	-	-	변경 없음
5	영광	군남	대덕	505-2	전	712	712	영광군	-	-	-	-	변경 없음
6	영광	군남	대덕	508-1	도	139	139	영광군	-	-	-	-	변경 없음
7	영광	군남	대덕	501-1	도	180	116	영광군	-	-	-	-	변경 없음
8	영광	군남	대덕	511-1	도	41	41	남○우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417	조○정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413	저당권	변경 없음
9	영광	군남	대덕	1627	도	2,663	222	국토 교통부	-	-	-	-	변경 없음
10	영광	군남	대덕	499-1	도	411	284	영광군	-	-	-	-	변경 없음
11	영광	군남	대덕	499	전	466	10	영광군	-	-	-	-	변경 없음
12	영광	군남	대덕	499-4	전	18	18	영광군	-	-	-	-	변경 없음
13	영광	군남	대덕	498-3	전	194	194	재정 경제원	-	-	-	-	변경 없음
14	영광	군남	대덕	498-1	도	378	42	영광군	-	-	-	-	변경 없음
15	영광	군남	대덕	499-2	전	683	683	영광군	-	-	-	-	변경 없음
16	영광	군남	대덕	508	전	2,046	2,046	김○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655	-	-	-	변경 없음
17	영광	군남	대덕	509	전	1,898	1,898	남○숙	영광군 군남면 광암로 93-47	-	-	-	변경 없음
18	영광	군남	대덕	511	전	1,916	1,916	남○용	영광군 군남면 광암로 417	-	-	-	변경 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9	영광	군남	대덕	510	전	1,484	1,484	영광군	-	-	-	-	변경 없음
20	영광	군남	대덕	510-1	전	1,359	1,359	남오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95 주공아파트203-404	신용보증기금	대구 동구 첨단로 7	가압류	변경 없음
21	영광	군남	대덕	512-1	답	2,750	2,750	영광군	-	-	-	-	변경 없음
22	영광	군남	대덕	512-5	구	169	122	삼오사	-	-	-	-	당초
				512-8	구	155	155	삼오사	-	-	-	-	변경
23	영광	군남	대덕	512-4	답	2,010	2,010	영광군	-	-	-	-	변경 없음
24	영광	군남	대덕	1626	도	489	489	국토교통부	-	-	-	-	변경 없음
25	영광	군남	대덕	522	답	3,656	3,656	영광군	-	-	-	-	변경 없음
26	영광	군남	대덕	523-6	답	1,540	1,540	영광군	-	-	-	-	변경 없음
27	영광	군남	대덕	512-6	구	20	20	농림축산식품부	-	-	-	-	변경 없음
28	영광	군남	대덕	523-4	답	142	142	영광군	-	-	-	-	변경 없음
29	영광	군남	대덕	523-5	답	2,202	2,202	영광군	-	-	-	-	변경 없음
30	영광	군남	대덕	523-3	구	66	66	농림축산식품부	-	-	-	-	변경 없음
31	영광	군남	대덕	524-2	구	119	119	영광군	-	-	-	-	변경 없음
32	영광	군남	대덕	524-1	전	1,993	1,993	남오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95 주공아파트203-404	신용보증기금	대구 동구 첨단로7	가압류	변경 없음
33	영광	군남	대덕	1625	도	2,658	445	국토교통부	-	-	-	-	변경 없음
34	영광	군남	대덕	1620-8	천	117,393	939	국토교통부	-	-	-	-	변경 없음
35	영광	군남	대덕	519	대	688	688	영광군	-	-	-	-	변경 없음
36	영광	군남	대덕	520	답	5,316	5,316	영광군	-	-	-	-	변경 없음
37	영광	군남	대덕	521	답	1,418	1,418	영광군	-	-	-	-	변경 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38	영광	군남	대덕	산123-3	임	221,782	45,918	영광군	-	-	-	-	변경 없음
39	영광	군남	대덕	산123-1	임	1,000	1,000	광주이씨 공파종중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547	-	-	-	변경 없음
40	영광	군남	대덕	522-1	답	10,126	10,126	영광군	-	-	-	-	변경 없음
41	영광	군남	대덕	512-3	답	1,663	140	임○철 외3인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419	임○도	군남면 대덕리497	지분4분의1	당초
				512-7	답	140	140			임○남	군남면 대덕리419	지분4분의1	
										임○풍	군남면 대덕리419	지분4분의1	변경

지장물건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군남면 대덕리	509	감나무	묘목	180주	남○숙	영광군 군남면 광암로 93-47	

신안군 공고 제2023-513호

신안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압해 선돌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신안 군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4.

신안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64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압해 선돌역사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9,70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신안군수
 - 주 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8. 열람 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3. 05. 04. ~ 2023. 05. 18.(14일간)

나 열람장소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및 신재생에너지과

※ 관계 도서는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및 신재생에너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240-8642) 및 신재생에너지과(☎240-8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대 장	편 입	성 명	주 소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압해읍 동서리	648-1	전	231	231	이* 현	목포시 산정동1710 현대아파트102-1003	목포시 남교동	유*임	근저 당권	
2	압해읍 동서리	648-3	전	828	811	이* 현	목포시 산정동1710 현대아파트102-1003	목포시 남교동	유*임	근저 당권	
3	압해읍 동서리	648-4	도로	79	58	이* 용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338	-	-	-	
4	압해읍 동서리	648-5	도로	231	97	이* 용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338	-	-	-	
5	압해읍 동서리	649-1	전	1,623	1,623	이* 석	대전광역시 서구 두산동909 수정타운18-204	-	-	-	
6	압해읍 동서리	649-2	전	2,228	2,228	신* 우 조* 경	여수시 선원동1256 남양아파트203-909	-	-	-	
7	압해읍 동서리	649-4	도로	7	7	김* 국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383-1	-	-	-	
8	압해읍 동서리	649-5	도로	30	30	김* 국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383-1	-	-	-	
9	압해읍 동서리	649-6	도로	126	117	김* 국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383-1	-	-	-	
10	압해읍 동서리	649-7	전	268	89	신안군		-	-	-	
11	압해읍 동서리	650-1	전	1,793	1,793	백* 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길 6	신안군 압해읍	압해농업 협동조합	근저 당권	
12	압해읍 동서리	650-3	전	217	159	신안군		-	-	-	
13	압해읍 동서리	651-1	전	238	238	김* 심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93-26	-	-	-	
14	압해읍 동서리	651-2	도로	56	56	신안군		-	-	-	
15	압해읍 동서리	651-3	도로	26	26	이* 범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396	-	-	-	
16	압해읍 동서리	652-1	전	1,120	1,114	신안군		-	-	-	
17	압해읍 동서리	652-3	도로	109	100	이* 봉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396	-	-	-	
18	압해읍 동서리	652-4	도로	243	223	이* 범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396	-	-	-	
19	압해읍 동서리	652-5	전	144	6	신안군		-	-	-	
20	압해읍 동서리	653-3	도로	129	106	이* 열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699	-	-	-	
21	압해읍 동서리	653-4	도로	315	140	이* 열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699	-	-	-	
22	압해읍 동서리	673-6	도로	36	20	신안군		-	-	-	
23	압해읍 동서리	673-8	도로	79	79	신안군		-	-	-	
24	압해읍 동서리	673-12	도로	215	61	전* 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407	-	-	-	
25	압해읍 동서리	673-13	도로	391	295	이* 록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705	-	-	-	
합 계				10,762	9,707	-	-	-	-	-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생명의땅 으뜸진남

발행인 전라남도 편집인 대변인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061-286-2073